

# 사법감시

통권 제14호 | 2000년 6/7월호

시론 계속되어야 할 사법개혁 / 김제환	2
우리의 주장 검찰에게만 통용되는 인권 / 박원석	4

## 특집 I 재벌, 변호사 그리고 법

변호사들의 재벌 범죄 은폐 · 축소 / 이재명	6
'울촌'의 반박문	8
현대전자관련 문제점, 파급효과, 대책 문서 전문공개	10
삼성재벌의 변칙증여, 과연 법적으로 정당한가? / 하승수	13

## 특집 II 선거법, 무엇이 문제인가?

선거법 이렇게 고쳐야 / 백승현	16
공천무효가처분 결정의 의미 / 김남근	20
사법정의가 부정 · 타락선거를 막는다 / 손희재	24
이것만은 고치자 '절차의 편의'에 대한 두 가지 에피소드 / 이병래	27

## 논쟁 법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 예외조치 온당한가?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결국 국민의 불이익 / 이홍욱	29
전문자격사 규제개혁의 의의와 방향성 / 김태운	30

## 기획 변화하는 사법권

사법사상 처음이라구요? / 이충원	31
인터뷰 / 이재명	33

법과 현실 불친절, 고압적 행태 그리고 뒷돈? / 최윤	35
아름다운 만남 환경련 여영학 변호사 / 장운선	37
사이버로 클릭! 법률, 인터넷 / 김민중	39
시민의 사법참여 왜 시민이 재판을 해야 하는가 / 박홍규	41
초점 거짓말 선서 / 강신하	26
간금투고 법률가의 윤리를 다시 생각한다 / 한인섭	45
활동보고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50

# 계속되어야 할 사법개혁

| 김제환 |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



"당장 표와 연결될 수 있는 달콤한 공약이 중요하지, 아직껏 한번도 검찰청이나 법원에 갈 일이 없었던 사람에게 사법개혁을 위해 많은 돈과 비용을 들이겠다는 공약은 경제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발상을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약력

서울대 법대졸업/고려대 대학원 법학과 졸업/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영국 옥스퍼드대학교 visiting graduate student/현 고려대 법과대학 조교수 ·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총선을 앞두고 각종 구호와 공약들이 눈과 귀를 어지럽힌다. 공약은 받아들이기엔 따라서는 희망이 될 수도 있으나, 헛된 약속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무수히 겪어 알고 있다. 그러나 공약이 지켜지지 못하는 것보다 더 참담한 것은 공약으로조차 제시되지 못하는 소망이 있을 경우일 것이다.

## 공약으로조차 제시되지 못하는 사법개혁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와 학자들, 법조인들은 사법개혁을 위한 연구와 공청회 등을 통해 꾸준히 목소리를 지켜 왔다. 그러나 진정으로 소망하고 있는 사법개혁의 청사진이 제시되었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번 대법원이 이른바 "21세기 사법발전계획안"을 내놓은 이후, 이에 대하여 이렇다 할 논의도 없이 지나더니 이번 총선에서 제시되는 공약들을 살펴도 사법개혁에 관한 한 이렇다할 공약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다. 이제 대법원의 사법발전계획으로 사법개혁 문제는 마무리 되었다는 것인가.

물론 대법원의 사법발전계획안에는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통합재판부 제도의 도입, 민사조정제도 및 지급명령제도의 강화, 소액사건 절차의 개선뿐 아니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양형조사위원회의 설치,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 검사가 가진 증거에 대한 증거개시청구권, 등기업무의 합리화와 민사소송구조 활성화, 법원 민원처리 절차의 개선 등 국민의 인권 보호와 사법행정상의 개선을 위한 많은 제도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법관 단일호봉제의 도입은 법원의 민주화, 사법부의 독립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법개혁이 완성된 것인가? 필자의 생각은 부정적이다.

##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더딘 사법개혁

김영삼 정부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법에 관한 국민들의 염원은 법률서비스의 개선, 법관 임용제도의 개혁, 법조비리의 제도적 근절 등과 같은 사법제도의 큰 틀을 개혁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험보다는 교육에 의한 법률가 양성제도를 도입하고, 사법시험을 선발시험에서 자격시험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법조인양성제도를 개혁함으로써 법조인의 수를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값싸게 받을 수 있게 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곧바로 법관에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로서 충분한 사회경험을 하고, 그 과정에서 능력과 품성이 검증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하자는 법조일원화제도의 도입, 전판예우로 인한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판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 제한과 변호사 수임료를 투명화 하자는 주장 등을 제기해왔다. 또한 이런 문제를 두고 사법부와 대통령의 법학교육개혁 자문기구, 사법개혁 자문기구 등이 오랜 기간 연구검토를 계속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민들의 오랜 염원과 많은 연구검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만족할만한 성과가 있는 것 같지 않다.

대부분의 핵심적인 개혁과제가 '장기검토과제'로 미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사법발전계획안에서 받아들여진 많은 내용들도 과거에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여 왔던 내용들이므로, 그 성과가 일부나마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고 자족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 사법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정치인의 의무

그러나 개혁은 할 수 있을 때 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른 모든 개혁이 그러하듯이 사법제도의 개혁은 국가의 큰 틀 중의 하나를 바꾸는 것이며, 여기에는 많은 관계인들의 이해가 얽혀 있고, 또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력과 국민들의 결집된 의사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세계개혁 문제라든가 경기부양 문제 등 다른 분야의 개혁과 달리 일반 국민들 모두가 항상 피부로 느끼는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평생에 걸쳐 한두 번 소송을 할까 말까 한 것이 우리 국민들의 실정인 것이다. 정치인들이 사법개혁에 관하여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으로 생각된다. 당장 표와 연결될 수 있는 달콤한 공약이 중요하지, 아직껏 한번도 검찰청이나 법원에 갈 일이 없었던 사람에게 사법개혁을 위해 많은 돈과 비용을 들이겠다는 공약은 경제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발상을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국민들보다 앞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록 상당수 국민들이 그 문제점을 몸으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여 개혁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그 내용이 어렵고 복잡한 사안일수록 개혁할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 법이다. 여야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나마 개혁적인 정책이 보드나온 위치에서 논의될 수 있을 때 개혁의 기초가 급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다 뜯어고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적어도 큰 틀에 있어서 사법개혁에 관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청사진에 따라 사법개혁은 차근차근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겨레

# 검찰에게만 통용되는 인권

| 박원석 |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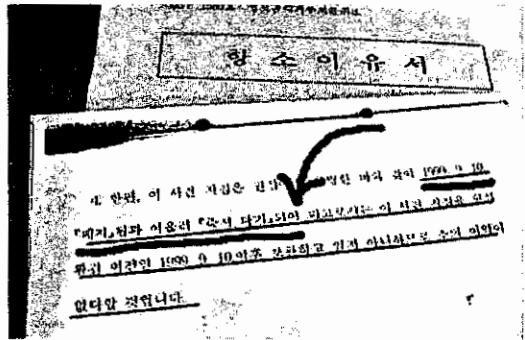
꼭 13년 전 대학 휴학중이던 한 청년이 시위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이른바 '운동권'은 아니었다. 시위에 참여하게 된 것도 '특별한 신념체계'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정의감과 우발적인 군중심리에 동화된 까닭이었다.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난 그는 대학 졸업 후 평범한 삶을 계획했다. 시위전력이 취업과 진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일말의 불안감은 있었지만, 형을 산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노심초사하지는 않았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자랑할 것도 숨길 것도 없는, 그저 나쁘지 않은 추억일 뿐이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생활에 막 적응해 갈 무렵 예기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다. 주거지 관찰 경찰서의 직원이 찾아와 이것저것 근황을 물었다. 처음엔 겁도 나고 기분도 나빴지만 한 번이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다. 찾아오는 횟수는 더 늘어났고, 점차 정례화 되었다. 특별한 것을 캐는 눈치는 아니었다. 하지만 불시에 집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아내의 불안한 눈빛을 마주하고, 직장 동료들의 눈치를 보며, 회사로 걸려온 전화를 처리하는 것은 피로운 일이었다. 지난 일 때문일 것이라는 막연한 짐작은 시간이 갈수록 구체적인 불안감이 되었다. '혹 당시의

일이 큰 죄는 아니었던가', '나도 모를 큰 일에 휘말려 있는 것은 아닌가'. 무엇 때문인지 알아보고 싶었지만, 그것은 더 두려운 일이었다. 그러길 6-7년, 어느 날부터 이 불청객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이었다.

## 공개대상 문서파기는 우연의 일치?

이 사연의 주인공 음영천씨는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10여년 간의 사찰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과정에서 이 같은 사찰활동이 검찰의 '공안사범 사후관리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숨겨진 사실이 밝혀졌고 음영천씨는 1심에서 승소하였다. 99년 4월 1일 대검공안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87년부터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집시법, 노동관련법 위반 등으로 구속됐다 출소한 인사들을 지검, 지청별로 4등급으로 분류해 동향을 파악하는 등 별도로 관리해 왔다'며 '87년 사회안전법이 보안관찰법으로 대체 입법될 당시 공안사범 사후관리지침을 그대로 둔 것이 지금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대검 공안부는 또한 '이 제도를 폐지, 대폭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아울러 발표했다. 이는 결국 검찰이 법률적 근거가 상실된 유명지침을 유지하며, 10여년간 인권침

해를 해온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음영천씨는 위자료 청구소송에 그치지 않고 서울지검의 '동향파악 지침 및 관리카드' 등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청구소송도 제기하였다. 이 또한 1심에서 승소하였다. 이 정보공개 소송은 비단 음영천씨 개인만이 아닌 검찰의 인권침해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소송이었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5월, 서울지검은 이전까지의 변론요지와는 달리 "해당 문서(동향파악 지침)를 대검 지시에 의해 파기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소송의 처음부터도 아니고 1심 변론 과정에서도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이었다. 이에 정보공개 소송중인 문서파기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대검은 '99년 9월 14일 해당 지침 및 관리카드를 즉시 폐지, 파기하라는 시달공문을 일선 청에 내렸다. 지침 원본은 대검에서 보관하고 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이다. 대검이 공문을 시달한 99년 9월 14일은 음영천씨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날이다. 이를 단지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을까? 정상적인 업무수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시의적절한 타이밍과 방식에 의혹을 떨칠 수 없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문서의 파기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정부기록물관리법」 관련 법률이 '문서의 무단파기'를 금지, 처벌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지침과 같은 '문서보존년한'이 없는 대외비 문서의 파기행위에 관한 규정은 없다. 또한 올해 시행된 이 법의 소급적용도 불가하다. 결국 검찰의 문서파기는 도덕적인 의혹의 대상이 될 지는 몰라도 법률적인 논란의 대상은 못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는 '입법상의 흠결'의 문제이겠지만 그 절묘한 빈틈이 너무나 아쉽다.



대검은 '음영천씨가 확정판결을 받아 온다면 공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말이 함의하는 바는 '서울지검을 상대로 한 소송이 기각된 후 대검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보라'는 것으로 들린다. 이 사건의 대리인인 이상훈 변호사는 이에 대해 "지침은 동향파악의 대상범위와 내용 등이 담긴 문서일 수 있다"며,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인 만큼 판결과 관계없이 지금이라도 지침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사자인 음영천씨 또한 '나 같은 피해자가 다시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소송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검찰의 사찰활동의 진상이 드러날 때까지 소송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검찰에게 통용되는 인권은 따로 있는가?

검찰은 지침 파기의 사유로 '더 이상의 인권 침해를 우려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병 주고 약 주는' 지극히 편의적이며, 모순된 변명에 불과하다. 이 사건에서 이미 인권 침해의 당사자격인 검찰이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없이 오히려 '인권'을 논하는 것이 과연 가당한 일인가. 대한민국 검찰에만 통용되는 인권기준이 따로 있지 않고서는 말이다. 검찰이여, 지금이라도 당장 어두운 캐비닛 한 구석에 박아 놓은 사찰정보를 꺼내놓으라.

## 변호사들에 의한 재벌의 범죄은폐·축소

법정의를 지켜야 할 변호사들이 오히려 재벌의 범죄를 은폐·축소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한 사건이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 범죄사실 은폐·축소에 가담한 변호사

“관련자들은 반드시, 어떠한 형사책임을 받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현대를 밀고 금감위의 진술대로 일관되게 진술해야 한다.”, “미리 입을 맞출 수도 있겠으나, 검찰에서의 ‘탄로’는 시간 문제이므로 차라리 2안은 채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은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 의뢰를 맡았던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다소 충격적이지만 계속해서 인용해 보자.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기소가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에 의하여 무죄가 되고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 마치 두목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해 감옥행을 대신하는 조직폭력배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 너무 과장된 표현일까? 일반국민들에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조차 어려운 일인데, 재벌은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넘어 범죄사실을 은폐까지 하고 있으니 굳이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국민이 이러한 변호사의 행위를 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상적인 법률자문으로 바라보지는 않을 것은 분명하다. 오히려 이 같은 행위는 범행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 ‘사전입맞추기’ 준비는 변호사들의 몫(?)

사건의 자초지종은 이렇다. 작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현대전자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관련당사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자 현대 측은 다섯 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현대 경영전략팀 주재로, 사건관련 현대계열사 임직원들과 변호사들이 참가한 이 회의의 목적은 여러 회의자료를 검토한 결과 주가조작 사실을 은폐하고 책임자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검찰수사에 대비해 주가조작을 단순한 투자목적으로 호도하고 사건 책임자를 현대증권 이익치 회장이 아닌 실무자선에서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각각의 상황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사전 입맞추기’를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회의에서 변호사들이 사건을 은폐하는 내용의 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주가조작 사건의 진실을 직·간접적으로 은폐했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이 주가조작이라는 범죄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 사실관계 또는 법률적용에 관해 변호사로서 정당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현대측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직접 진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 변호사의 법률자문 범위를 넘어섬으로써 윤리와 품위에 반하는 변론활동을 저지른 것이다.

### 진상조사를 통한 처벌은 필연적

물론 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결백한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거나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을까 해서이다. 그러나 만약 변호사가 법이 정한 변호사의 변론 범위를 벗어나, 이를 악용해 증거를 은닉한다거나, 법망을 피하는 방법을 사주하거나, 사건을 은폐·조작하는 것은 법의 보호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오히려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 회의에 참석한 변호사들의 구체적인 역할과 자문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관련 변호사들이 어떤 해명을 할지, 그리고 대한변협은 진상조사를 통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도로 변호사업계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의 부도덕하고 위법적인 변론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록 대한변협이 강제조사권을 갖지 못하고 회원단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대한변협차원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진상조사 결과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계 차원을 넘는 법의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관련 문서와 검찰진술내용으로 보아 어떤 변호사는 주범적인 특정 임원의 도피를

권고하기까지 했다.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법의 권위와 형평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 후 일부 검사와 법관이 지적했듯이 검찰과 법원이 이와 유사한 사례들로 인해 수사와 재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 만큼 철저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모처럼 공론의 장에 올려진 사안이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변호사법, 윤리강령의 개정 필요

사실 그동안 우리 법조계에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현대사건과 같은 유형의 변론활동을 벌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건은 그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미국 변호사 윤리강령은 '변호사는 그 비행을 어떻게 숨기느냐 등과 같이 그 목적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적법인 줄 알았으나 나중에 범 죄나 부정으로 판단되는 의뢰인의 행위'에 계속 협조해서는 안된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변호사 윤리강령에는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다. 워낙 포괄적이고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강제성이 없는 규정 이어서 실질적인 처벌효과를 지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법 역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는 실정이다. 의정부, 대전 법조비리 사건을 거치면서 비리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처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뒤늦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 역시 이번 사건과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빠져 있다. 법조계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이 같은 범죄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이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비윤리적이고 위법적인 변론활동을 근절할 수 있도록, 오는 국회회기 중에는 반드시 변호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Ⅲ

## 울촌 반박문

### - 명예훼손 행위 등에 대한 시정요구

법무법인 '울촌'은 현대전자주가지작사건 관련 변호사들의 범죄혐의 축소·은폐에 대한 참여연대의 보도자료 배포 및 대한변호사협회 제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정요구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사법감시]지는 실명비판과 함께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감시가 (사법감시)의 목표이지만 더불어 어떤 유형의 권력남용도 경계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 편집자 주

1. 귀 단체는 2000. 3. 30.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법조출입기자들에게 '현대전자주가지작 대책회의 관련 변호인들에 대한 문책 요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귀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근거 없이 당 법무법인과 그 소속 변호사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귀 단체가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기에 더욱 실망이 큼니다.

2. 위 보도자료는 "99년 4월 12일, 13일 오전·오후, 19일, 22일 등 총 5회에 걸쳐 현대 경영전략팀, 현대증권, 현대상선, 현대중공업 임원들과 울촌 법무법인의 우창록, 강희철 변호사와 강현중, 박종복 변호사 등이 참가(변호사들이 모든 회의에 참가한 것은 아님)한 가운데 진행된 대책회의에서 변호사들은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상급자의 책임을 면하고 실무자 선에서 사건을 축소하는 내용의 대응방안을 만들어 제시하는가 하면 전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검토하는 형식으로 현대전자 주가지작사건의 조직적인 축소, 은폐에 개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보도자료의 내용은 당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현대전자 주가지작사건의 조직적인 축소, 은폐에 개입하였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귀 단체는 귀 단체의 홈페이지에 위 보도자료를 게재 하면서 귀 단체가 현대전자 주가지작사건이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되었다는 점에 대한 근거자료로 들고 있는 "현대전자관련 문제점, 파급효과, 대책"이라는 문건을 스캐닝하여 위 보도자료에 "관련자료1 : 대책회의 문서"라는 제목으로 첨부하여 됨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마치 당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위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게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구태여 다른 증거를 제시할 필요도



없이 다음과 같은 자체적 문제점만 보더라도, 위 보도자료의 내용은 적어도 당 법무법인과 그 소속 변호사들에 관한 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귀 단체도 쉽게 수긍할 것입니다.

가. 당 법무법인이 위 문건의 작성에 개입, 관여하지 않았음은 귀 단체가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수사자료에 의하더라도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당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사건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위 보도자료의 내용은 귀 단체가 스스로 공개한 자료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귀 단체가 공개한 수사자료의 어디에도 당 법무법인이 위 문건에 의하여 제시된 대응방안에 찬성하였거나 동조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 당 법무법인은 현대중공업의 의뢰를 받고서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합당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을 뿐입니다. 당 법무법인이 현대중공업의 의뢰를 받았다는 것은 귀 단체가 공개한 수사자료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당 법무법인으로서의 위 문건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방안, 즉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하여 당 법무법인의 의뢰인인 현대중공업측에게 형사책임을 전가하는 방안에 관여하거나 동조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았고, 또 그렇게 할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라. 이러한 연유로 현대증권의 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당 법무법인은 현대중공업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제외한 어떠한 법적 자문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귀 단체가 공개한 수사자료(박철재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단체가 위와 같은 내

용의 보도자료를 배포 및 게재하여 당 법무법인 및 그 소속 변호사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가 귀 단체에서 이 건에 관여한 법률가들의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러한 일이 단순한 실수로 행하여진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여 귀 단체의 신뢰성이나 명성에 흠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미 배포된 자료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귀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위 보도자료는 이를 즉시 삭제하거나 정정하여 더 이상 당 법무법인 및 그 소속 변호사들의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이 시정요구 서한을 위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문으로서 귀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실추된 당 법무법인과 그 소속 변호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5. 당 법무법인이 이 서신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자료의 검토 범위를 귀 단체가 공개한 자료로 국한한 것은 당 법무법인에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고객에 대한 법률자문과 관련한 변호사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및 관련자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점 때문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귀 단체가 공개한 자료들을 어떠한 경위로 입수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수사기록의 일부로서 여러 개인 및 법인에 관한 비공개사실을 담고 있는 위 자료들을 귀 단체가 임의로 일반에 공개한 행위의 법적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도 말씀 드립니다. ¶¶

## “현대전자관련 문제점, 파급효과, 대책” 문서 전문 공개

이 문서는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의 의뢰를 맡았던 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문서와 변호사들이 참석한 기타 회의자료를 토대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를 변호사의 통상적인 법률자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법감시]는 문서의 전문을 게재하고 독자들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 편집자 주

### 현대전자관련 문제점, 파급효과, 대책

#### I. 1안의 경우

금감위에서 진술한 대로 검찰에서 일관하여 진술하는 경우이다.

##### 가. 파급효과

현재 사회에서 논란되고 있는 정도의 파동이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나. 문제점

1안대로 되는 경우에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측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는 것은 거의 명백하다. 이에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 및 현대증권의 관련자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를 면하고자 금감위에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에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며, 처벌조항도 증권거래법제188조의 42항 1호(실제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이 아니라 위법 제188조의 41항(통정매매 등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으로 확대될 것이고 관련 처벌자의 범위도 예상이외의 범위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 다. 대책

금감위에서 진술자들이 “현대 맨”이라는 각오로 원래의 진술을 유지한다. 이 경우에 검찰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至難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 II. 2안의 경우

금감위 안을 다소 수정하여 중공업과 상선측에서 친분이 있는 증권의 박상무에게 증권 매수에 관한 자문을 부탁하고 이에 따라 박상무가 자문의 형식으로 김대리에게 지시하는 경우이다.

##### 가. 파급효과

박상무 관련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에 여론이 시세조종의 주동자로 현대증권을 지목하여 사회적 파동이 예상되지만 형사처벌의 범위는 박상무 선에서 국한될 가능성이 있다.

나. 문제점

1) 검찰은 현대상선이나 중공업이 왜 담당자인 법인영업부에 주식매수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지 않고 '오로지 친분' 때문에 박상무에게 매수자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집중추궁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박상무의 전력, family와의 관계, 말은바 업무의 성격을 파고 들다보면 의외의 사실이 드러나서 사건이 예상외의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2)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상선의 관련자와 박상무 및 김대리의 진술(박상무의 등장부분에 관한)이 불일치하여 검찰로부터 의외의 의혹을 살 가능성이 있다.

다. 대책

박상무의 등장부분에 관하여 관련자들이 미리 입을 맞출 수도 있겠으나, 검찰에서의 '탄로'는 시간문제이므로 차라리 2안은 채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Ⅲ. 3인의 경우

박상무가 현대상선이나 중공업의 포괄적 위임을 받고 '시세조종'의 주동자 역할을 한 경우이다.

가. 파급효과

박상무에게는 4가지 문제점이 있다.

a. 왜 법인영업을 담당하지 않고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그'가 이번 사건에 관여되었느냐이다. 이는 중공업, 상선, 증권 3사간의 공모가능성 및 웨미리와의 연결가능성을 제기하게 한다.

b. 왜 금감위의 진술에서 '그'를 관련자들이 은폐하고 검찰진술에서도 '처음에'는 이를 밝히지 않느냐이다. 이 역시 중공업, 상선, 증권 3사간의 공모가능성을 제기한다.

c. 정몽준씨와의 고교 및 대학 동창관계 및 업무의 특수성, 이것은 웨미리와의 공모가능성을 제기한다.

d. 박상무의 현대증권 상무라는 지위, 이것은 현대증권에서 시세조종을 주동하였다는 가능성이 있다. 박상무의 이와 같은 4가지 문제점 때문에 검찰 및 여론은 '바로' 현대그룹전체가 조직적인 시세조종을 하였다고 들고나올 것이며, 이러한嫌疑는 설령 법정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더라도 시간의 지체성 때문에 벗기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나. 문제점 - 생략

다. 대책

1. 박상무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경우는 다음의 3가지 이다.

1) 관련자들이 검찰에 출석하여 막바로 자백한 경우 : 이 경우 검찰은 새로운 사실에 당황하여 수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팀을 확대하여 총력수사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이 경감되거나 시세조종의 사회적 파동이 발생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 중공업이나 상선의 관련자들이 무죄판결을 받고자, '박상무'를 거명하지 아니하지만 김정욱 대리에게 주식 매수에 관한 모든 것을 일임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 이 경우에 검찰은 금감원 고발자들에 대한

유죄의 입증이 어려우므로 유일한 유죄의 증거인 김대리를 嚴問할 것이며, 업문을 이기지 못한 김대리는 구속의 위험을 벗어나고자 '박상무' 를 거명할 것이다.

3) 김대리가 박상무나 회사에 불만을 품고 '박상무' 를 검찰에 거명하는 경우 :

2. 이상의 3가지 경우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2의 경우이며 1, 3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좋다. 그 이유는 1, 3의 경우에도 관련자들이 스스로의 형사책임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자신의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 IV. 결론

따라서 1,2,3안 각자는 모두 문제점이 있으나 1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그 이유를 분석한다.

가. 1안의 관철 중에 설령 2나 3안으로 변경되어야 할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이나 사회적 파장에 있어서 처음부터 2나 3안으로 나오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우리 법체계상 수사단계에서의 허위진술은 처벌이나 형의 가중 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 이 사건은 1안에 의하더라도 시세조종의 목적을 검찰이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검찰은 김정욱 대리의 진술을 토대로 현대증권업이나 현대상선의 관련자들의 시세조종의 목적을 자백받는데 수사력을 집중하여야 하므로, 제3의 관련자의 개입가능성에 관한 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검찰수사의 실무는, 원칙적으로 경찰 등 1차적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도록 짜맞추는데 초점이 있으며, 새로운 범죄사실의 포착은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 이러한 검찰수사의 실무는 특수부가 1차적 수사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이번 사건과 같이 2차적 수사에 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라. 따라서 1안은 원칙적인 경우이고 2, 3안은 특별한 경우에 속하는데 가능성이 희박한 특별한 경우를 먼저 들고 나오는 것은 下之下方이다.

#### V. 1안 채택시 유의점

1. 관련자들은 반드시, 어떠한 형사책임을 받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현대를 믿고 금감위의 진술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야 한다.

2. 그 경우에 검찰은 제3의 관련자에 대한 의혹에서가 아니라, 증권거래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2,0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일개 증권회사의 대리가 취급하여 좌지우지하는데 의문을 품을 것이다. 그 경우에는 증권회사 법인영업부의 일반적인 업무처리방식 즉, 말단 대리라고 하더라도 기관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직접 받아 처리하며 본부장이나 팀장의 지시를 받는 경우가 없다는 것과, 김대리의 이권 처리의 성격 즉, 이권 업무는 현대증권의 업무신장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계열사의 주식매수를 도와주는 업무처리의 단순성을 검찰에 직접 설명하여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

3.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1안으로 인해 형사기소가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문변호인들의 조력에 의하여 무죄가 되고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 11

## 삼성재벌의 변칙증여, 과연 법적으로 정당한가?

재벌의 변칙 상속·증여가 사회적 문제로 된 지 오래이다. 변칙 상속·증여의 대명사가 된 삼성재벌의 경우에도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비상장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기법들을 개발하여 3세인 이재용씨에게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해왔다. 그동안 변칙증여에 이용된 기업만 열거하더라도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에버랜드, 삼성SDS 등이 있고, 이 기업들은 모두 자기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라고 자부하는 기업들이다. 삼성그룹에 속한 기업이 재벌총수와 그 일가족들의 개인기업이 아니라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동안 여러차례 비판이 있었고 사회적 물의가 있었음에도, 그에 굴하지 않고 삼성재벌은 곳곳하게 변칙증여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너희들이 지껄이더라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는 식이다. 또 한가지, 삼성재벌은 뽕뽕하게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물론 정부도 여러차례에 걸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이루어지는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막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재벌의 변칙증여에 대해 실효성있는 대책이나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 세법을 고쳤다고 하지만, 재벌들이 바보가 아닌 이

상에야 구멍이 숭숭뚫린 세법에 걸릴 리가 없다.

### 처벌은 못할망정 면죄부만 발행

이재용씨에 대한 변칙증여 과정에서 이재용씨가 낸 증여세는 겨우 16억여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정도의 증여세를 내고 이재용씨는 지금 수조원대의 자산가로 변신하고 있다. 이를 방지해 두고 어떻게 조세형평을 논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재벌의 변칙 상속·증여를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법에 호소해서라도 이를 막아보려고 여러차례 소송 등의 법적 수단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법은 삼성재벌의 손을 들어주었다. 물론 지금처럼 법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은 "법원과 검찰이 어떻게 재벌을 손대겠어?"라며 이를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법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게 될 것이다.

최근에도 법원과 검찰은 삼성SDS 사건과 관련하여 삼성재벌에게 면죄부를 발행해 주었다. 사건의 전말을 요약하면 이렇다. 삼성SDS는 작년 2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이재용씨를 비롯한 이건희씨의 자녀들에게 주당 7,150원의 가격에 삼성SDS의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문제는 그 당시에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던 삼성SDS의 가격은 주당 55,000원에 이르렀

다는 데에 있다. 즉 거래가격이 55,000원에 달하던 주식을 재벌총수의 자녀들에게 그 1/7도 안되는 가격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삼성 SDS 주식의 가치는 그 이후에도 계속 올라 지금은 주당 500,000원을 호가한다고 하니, 이재용씨는 또다시 손쉽게 무려 70배 정도의 불로소득을 올린 셈이 되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그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이재용씨에게 신주를 취득할 수 있게 해 준 삼성SDS의 임원들을 배임죄로 고발하고, 이재용씨에게 신주가 발행되지 않도록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심문을 종결한 이후에 한달 보름 남짓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신주인수권 행사일을 불과 몇일 앞둔 시점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재벌들의 변칙증여에 대해 정당한 과세를 해야 할 국세청도 이와 같은 변칙증여행위에 대해 침묵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국세청은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재벌들을 상대로 주식이동상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물론 삼성재벌은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특히 삼성재벌이 이번 삼성SDS 사건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을 보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보충적으로 일정한 산식(자산가치와 3년간 가중평균 수익가치의 단순평균)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문제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사용되는 산식에 따르면, 주식의 실제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삼성

측은 이러한 법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7,150원이라는 가격이 위와 같은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가격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과 검찰은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으로 비상장주식 평가의 원칙은 분명히 '시가평가'이다. 그리고 이재용씨가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당시에 삼성SDS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55,000원 정도에 거래되었다는 것은 주식거래관련 인터넷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한 사실이다. 더구나 99년 2월 22일자 매일경제신문은 삼성SDS 주식거래가 매우 활발하여 연초 32,500원이던 주가가 99년 2월 19일 현재 58,500원까지 오른 상태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시가에 의해 법률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래의 3개월 전후에 다른 거래가 있었던 경우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까지 하다.

### 탈법적인 부의 세습 처벌을 위한 법률적 근거 충본

법원과 검찰의 법률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존중에 결맞는 신중한 사실파악과 법률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법률판단이 사회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삼성 SDS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판단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리고 변칙증여를 막아야 할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이 오히려 재벌의 변칙증여를 합리화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참여연대는 이미 검찰의 무혐의처분에 대해

항고를 해 둔 상태이고,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도 불복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다.

재벌의 세부담없는 변칙증여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재벌과 같은 대재산가들이 세금한푼 내지 않고 자식들에게 부를 이전시켜주는데, 어떻게 서민들과 중산층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무능한 자손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려는 재벌총수들의 허황된 욕심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경영상의 난맥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탈법적인 부의 세습을 어떻게 방관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미 삼성재벌의 변칙증여 문제는 이 사회에 최소한의 정의가 숨쉬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었다. IMF위기가 고비를 넘겼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은 상태이고, 최저생계수준 이하에서 허덕이는 절대빈곤층의 숫자도 엄청난 수준이다. 그리고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에 들어간 비용 때문에 국민들은 앞으로 상당한 세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저지르고 있는 변칙증여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세청은 이번 삼성SDS 변칙증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법률적 근거는 충분하다. 대법원 92누17174 판결에서는 '불특정다수인간의 여러 차례에 걸친 거래로 인하

여 형성된 가격이 아니었거나 대량거래를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당해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또한 6개월동안 248주가 거래된 사실에 대하여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97누8502)도 있다. 따라서 이재용씨 측의 주장대로 한 달 동안에 매수주문이 10,000주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담합에 의한 거래가 아닌 한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회사나 주주의 이익보다는 재벌일족의 이익에 충실했던 삼성SDS 임원들에 대한 무혐의처분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원도 사회정의에 반하고,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재벌들의 변칙증여 행위에 대해 '법'의 이름으로 보다 신중하면서도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iii

※ 지난 5월 9일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오세빈)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신주인수권행사금지가처분 항소심에서 참여연대의 주장을 받아 들었다.

## 공직선거와 시민참여 선거법 재개정의 방향

2000년총선시민연대(약칭 총선연대)의 낙선 운동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의 선거참여를 금지 시 해온 현행 선거제도와 선거관행에 새로운 문제 제기를 던졌다. 시민단체가 불복중운동까지 선언 하며 시민의 참정권 회복을 주장한 결과, 정치권 은 여론에 밀려 선거법에 대한 일부수정에 합의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안은 시민사회 단체 등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현행 선거법에 비하여 거의 나아진 점이 없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개정선거법 중 시민사회단체의 선거 참여와 관련한 조항에 한해 시민단체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 개정 전 선거법의 문제점

선거법의 목적은 주권자인 국민이 최대한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그 하나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정치 참여의 결과가 왜곡되지 아니 하도록 경쟁자간에 공정한 게임의 법칙을 적용하고 규율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 전 선거법은 실제 공명선거를 위 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규제책을 마련하여 왔다고 하지만 그러한 규제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투표장에 가서 투표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제한하여

왔다. 문제는 실제 이러한 규제가 일부 재주 좋은 출마자 등에게는 그다지 위협적인 것도 아니었다는 점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선거 참여를 직접적으로, 원천봉쇄하고 있는 선거법 87조였다. 선거법 87조는 단체는 사단, 재단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기간 중에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다. 실제 국민들의 정치적 활동은 개별적인 경우보다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 즉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이 조항은 국민의 정치참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한편, 위 제 87조가 아니라도 선거법 제 57, 58조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후보를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선거운동을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 국민들은 후보 자체에 대한 평가를 단순한 의견 개진 이상 할 수 없으며 총선시민연대 등의 낙선, 낙선 운동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었다. 결국 선거법은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자 하는 집단적 행동을 후보자 등의



시민사회단체의 선거참여를 직접적으로, 원천봉쇄하고 있는 선거법 87조였다. 선거법 87조는 단체는 사단, 재단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기간 중에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다. 실제 국민들의 정치적 활동은 개별적인 경우보다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 즉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이 조항은 국민의 정치참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당선되고자 하는 선거운동과 동일시하는 시각에서 제정됨으로써,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 선거법 개정의 원칙

이에 총선시민연대는 위와 같은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하기 위하여 선거법 개정을 위한 다음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 1) 국민들이나 국민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모인 시민사회단체의 공적인 정치참여(유권자 운동)를 가능하게 하도록 할 것이다.
- 2) 또 이러한 유권자 운동을 후보가 당선을 위하여 하는 좁은 의미의 선거운동과 구별하여야 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3) 이러한 유권자 운동은 좁은 의미의 선거운동과 구별하여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광범위하게 수정되어야 하며
- 4) 그리고 유권자 운동은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기간 내외를 불문하고 인정되어야 한다.
- 5) 따라서 낙천 뿐 아니라 선거운동기간 동안 국민을 직접 상대로 하는 낙선운동을 통한 정치참여가 가능하여야 한다.
- 6) 그 방법 역시 후보나 정당의 선거운동에 적용되는 운동 방식의 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

여서는 아니된다.

7) 이러한 보장은 되도록 모든 단체에 허용되어야 하나 탈법적 선거운동의 방식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면 합리적 제한은 가능하다.

요컨대, 87조를 실제적으로 폐지하여 시민단체가 선거에 관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일정 조건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에 관하여 행하는 행위는 이 법에 정하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고 후보나 정당에게 적용되는 제한을 되도록 광범위하게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무분별한 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선거법 제10조나 제81조의 개념을 원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 개정선거법의 시민참여 관련 조항

그러나 지난 2월 여야 3당이 통과시킨 개정선거법의 골자는 첫째, 제 87조에 단서조항을 두어 선거법 제 81조에 규정된 단체의 선거 참여를 허용하되 둘째, 후보, 정당이나 유권자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 참여를 할 수 없으며 셋째, 시민사회단체가 선거 참여를 하는 경우에 그 방법에 있어서도 홍보물 배포, 집회 개최, 서명, 날인 운동 등을 모

두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선거법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기자회견을 통한 활동 이외의 모든 활동이 사실상 금지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단체의 선거활동 허용을 계기로 관변단체의 선거 개입, 위장 사조직의 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의 범위를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하여도 우선,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선거운동기간에만 허용한다는 것은 후보 등과 같이 선거운동의 이익을 직접 자신에게 귀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인 선거참여를 후보 등의 선거운동과 동일시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당선을 위한 운동으로 한정하여 '낙선운동' 등 유권자 운동을 선거운동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의 선거 참여는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한 활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국민에 대한 직접 의사 전달 수단인 집회와 서명운동을 선거운동기간에마저 금지한다는 것은 명목상으로는 선거 참여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결국 시민사회단체 나아가 국민의 선거과정의 적극 관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실제 현행 선거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개정안은 총선과정에서 낙선, 낙선 운동을 실제적으로 불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시민사회단체들이 활동할 여지를 대부분 봉쇄하였다.

### 개정 선거법의 문제점

첫째,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기간 동안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역시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정당이나 후보자들에 대한 제한을 역시 동일하게 받아야 하는 것이 공평하고 선거과열의 방지

를 위하여도 필요하다는 견해는 여전히 선거를 선거운동을 통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후보자들의 것만으로 보는 기초에서 있으며 어떤 시기, 어떤 장소에서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으로써 위헌적인 것이다.

둘째,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일정기간만 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요구는 후보자와 운동원 그리고 소속 정당에 적용되는 것으로 족한 것이지 국민 일반에게 그러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선거의 과열방지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셋째, 유권자들을 직접 상대로 하는 운동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운동 기간 시민사회단체와 후보자 진영과의 충돌 가능성 배제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으나 유권자에 대한 호소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번 유권자운동이 후보자 진영과 충돌을 야기할 이유가 없으며 제도적으로도 집회시간과 장소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한다든지 집회를 개최하는 단체에게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충돌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낙선운동은 해당당사자, 정당 나아가 지지 대중과의 갈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갈등 자체가 낙선 운동의 제한 근거로 사용되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그 갈등이 일방에 의한 다른 사람의 정당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발현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제한 이외에 선거운동원과 낙선운동자와의 충돌 등은 경쟁 후보 운동원들 사이의 문제와 다를 것이 없다. 어떤 일방이 다른 일방의 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할 경우 그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면 충분할 것이다.

넷째, 선거참여 방법의 제한 역시 시민단체의 공적인 선거 참여가 정치권을 상대로 한 운동이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핵심이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무시한 것으로 직접 접촉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집회 등을 금지한다는 것은 실제 시민사회단체의 선거 참여를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 선거법 중 시민참여 관련 조항의 재개정방향

### 1) 단체의 선거운동 허용

단체 중 선거운동 허용시에 그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함. 아울러 제 89조의 2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사조직에 의한 선거운동혼탁의 폐해는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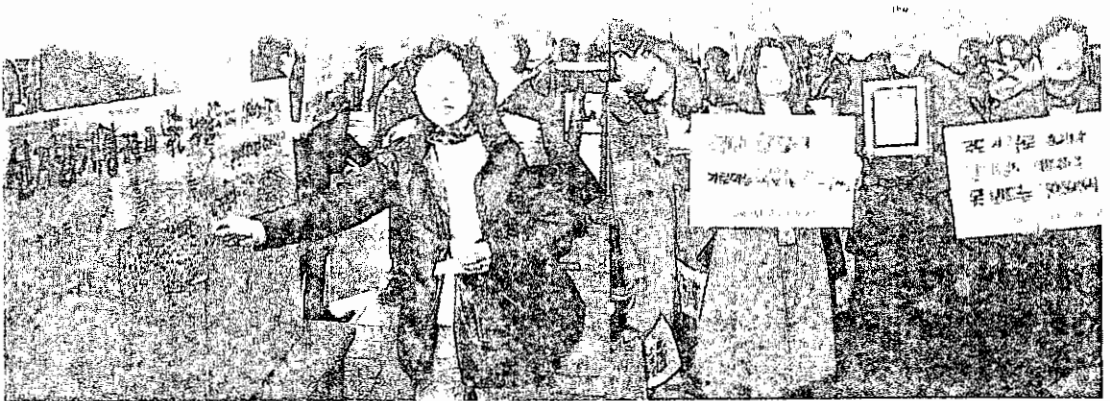
### 2) 사전선거운동 금지의 원칙적 해제

현재 사전선거운동은 그 주체를 불문하고 예외 없이 금지되고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선거운동

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범위를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및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등 현행 제 114조에 의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 축소하고 그 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사전선거운동은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함. 후보자와 정당 및 그 관련자의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 3) 기타 선거운동 방법규제와 관련한 규정들의 개정

후보자간 기회균등과 공정선거의 원칙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와 관련이 있는 자(현행 기부행위제한 대상자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범위가 합리적이므로 이를 원용함)에 대하여는 기회균등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현행대로 규제하되 이들을 제외한 일반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111



## 정당공천제도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안에 대하여

지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중에 제기된 '국회의원후보자공천무효확인소송'에서 드러나 정당 민주주의 훼손 사례는 현행 정당법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 노원갑 지구당은 신청기간에 당원의 자격도 없었고 신청도 하지 않았던 후보를 신청기간으로부터 한달이 지난 후 공천자로 확정발표 했으며, 더구나 이 후보가 공천을 반납하고 국회의원 출마를 포기한 후에도 또다시 당원도 아니었고 공천신청 절차도 밟지 않은 다른 인물을 공천후보자로 확정했다. 새천년민주당 역시 군산갑과 인천 남구갑 지구당에서 이와 유사한 행태를 보였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이 같은 행위가 정당법에 명시한 지구당 대의기관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위 공천은 무효라고 보고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새천년민주당은 공천 효력이 정지된 후보자를 다시 공천자로 확정했다.

### 정당의 역할과 정당민주주의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여 정치에 반영하는 제도가 현재의 정당제도이다. 정당은 국가 기관이 아닌 자발적인 정치적 결사체이지만 공직선거, 국회의원영, 행정부의 조직 및 정책결정 등 광범한 국정분야에서 중요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

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서는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의 설립 및 활동에 대하여 일반결사와 달리 특별한 보호를 하는 한편, 그 공적기능에 비추어 공적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즉,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정당이 내부적으로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당이 위와 같은 공적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과 정당원의 정치적 의사가 수렴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다수결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등의 민주적인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 현행의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

이처럼 정당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정당법 제31조 제2항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는 후보자를 추천할 공직선거 선거구를 관할하는 해

정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정당이 내부적으로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당이 위와 같은 공적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과 정당원의 정치적 의사가 수렴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다수결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등의 민주적인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당 당부 대의기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는 당헌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9년 정기국회에서 추가된 동조 제3항에서는 “정당의 당원으로서 당헌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비를 납부하거나 무급으로 각급 당부에서 자원봉사를 한 자에 한하여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또는 당직자의 선거권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정당원들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한 상향식 정당민주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과 정당법상의 규정은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정당민주주의의를 올바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의 기본질서를 구성하는 내용이므로 당연히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며 정당들은 반드시 이와 관련한 당헌과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정당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의 정당민주주의 실현상황과 그 문제점에 대하여

그러나 한나라당의 경우는 당헌 제75조 제1항에서 “국회의원후보자는 당무회의의 심의와 총재단 회의의 협의를 거쳐 총재가 결정한다.”라고만 규정하여 전형적인 구시대의 하향식 공천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새천년민주당은 당헌 제100조 제

1항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는 지구당대의원대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여 제청한 2인 이하의 추천 후보자 중에서 총재가 당무위원회의 심사의 의결을 거쳐 추천한다.”라며 상향식 정당민주주의의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으면서도 부칙 제5조에서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후보자는 총재가 당무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추천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하향식 공천만을 인정하려 함으로써 당헌과 당규자체가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과 정당법상의 강행규정을 배제하는 탈법적 방법으로 매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을 때마다 당헌을 개정하여 “제00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서는 당총재가 추천권을 행사한다.”라는 예외규정을 신설할 경우 사실상의 원칙규정이 되어버려 위 헌법과 정당법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의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정도 국민들과 정당원들의 정치적 의사가 무시되고 당 대의기관의 대의기능이 묵살된 상태에서 당총재 1인 보스에 의하여 낙하산 공천, 밀실공천, 금전거래에 의한 공천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나라의 정당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 법원의 가치분신청기각결정과

### 기존정당의 개선노력

법원은 새천년민주당 군산시지구당의 재공천에 대한 공천효력정지기처분에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후보자등록에 임박하여 심리가 진행된 결과 선거의 진행에 혼란을 주지 않으려는 고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많은 아쉬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 후 새천년민주당은 재공천 과정에서도 대의기관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자 사후적으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하자를 치유하려 하는 등 어쩔 수 없이 정당법에 정한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을 했다. 또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이후 지방의회 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에서 새천년민주당 도당을 지구당의 당원대회나 동대문갑 지구당의 대의원대회 방식에서 알 수 있듯이 상향식 민주주의 절차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새천년민주당 송파구 구청장 후보선출 절차에서도 특정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탈법적인 절차진행으로 일부후보자들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대의원들이 반발하는 등의 파행이 빚어졌으나 새천년민주당 중앙당은 과거와 같이 밀어붙이기식 공천을 강행하지 않고 대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천후보자를 결정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의 용기 있는 판단이 있다면 정당들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정당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외국의 사례

정치선진국인 독일의 경우에도 1990년 독일 함부르크의 주의회 선거에서 집권 정당인 기민당은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전당대회를 진행하면

서 당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당지도부에서 정한 후보를 일방적으로 후보로 결정하여 선거에서 승리한 사건에 대하여 독일 함부르크 주의 헌법재판소는 1991년 판결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기민당의 후보결정은 당원의 토론의 자유를 박탈하고 이루어진 대의원대회의 결정은 무효이고 나아가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선거의 자유의 내용에는 정당내부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시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된 후보가 당선된 선거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 제도적 개선책의 필요성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정당법 제31조 제2항과 제3항의 상향식 정당민주주의에 관한 규정이 각 정당의 당헌을 구속할 수 있도록 구체적 규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정당민주주의를 침해한 공직후보자 공천의 무효와 공천이 무효일 경우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정당법 제31조 제4항을 "위 제2항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방식을 위반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은 이를 무효로 한다."로 신설하고, 선거법 또한 제52조(등록무효) 제3항을 신설하여, 현행 제3항을 제4항으로 "정당후보자의 공천이 무효인 경우 그 정당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로 하고, 선거법 제195조(재선거)의 7호를 신설하여 "정당후보자가 당해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2조에 제1항 제4호(또는 제76조)에 의하여 그 정당의 그 공직후보자추천이 무효로 결정된 때"로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정당내부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의 효력을 다룰 수 있는 제도

가 없어 정당이 비법인사단이라는 그 성격에 맞추어 법인내부의 분쟁해결 절차인 공천효력정지가 처분이나 공천무효확인 소송이라는 형태의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그 효력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내부에서 헌법기관인 정당내부의 공천절차는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많고,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민사소송의 소의 이익과 원고적격에만 매달려 그 공천절차가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심사하려 하기 전에 먼저 위 소송요건을 엄격히 하여 소송을 각하시킴으로써 원천적으로 사법적 심사를 봉쇄하려 하고 있다.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추천은 정당민주주의의 실현과 이를 통한 국가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발전, 정치민주화라는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심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다루이지 못하고, 경쟁후보자간의 정치적 공격무기로 소송이 악용되는 측면이 있어 공익적 관점에서 소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소송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4호 “정당내부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절차의 효력에 관한 권한쟁의”와 제66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제62조 제1항 제4호와 관련하여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절차가 헌법과 정당법에 위반한 경우 그 효력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를 각각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3항을 신설하여 “헌법재판소의 제65조 및 제67조 제3항의 결정은 그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를 기속한다”로 하든가 아니면, 헌법재판소법 제4장에 제76조로 “제6절 정당내부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절차 효력에 관한 심판”이라는 절을 신설하여 “정당내부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절차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선거구 지구당의 정당원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헌

법재판소에 그 효력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로 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63조 내지 65조를 준용한다”, “헌법재판소는 제1항과 관련하여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절차가 헌법과 정당법에 위반한 경우 그 효력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및 “헌법재판소의 제3항의 결정은 그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를 기속한다”는 규정을 뒤야 한다.

### 사법심사를 통한 정치문화의 개선

한국의 정치현실을 보면 기존의 정당들은 이러한 정치현실을 앞장서서 개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국민들 일반은 정치권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우리 정치현실이 개혁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거리에서 정치개혁운동인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거리에서의 정치개혁운동은 많은 시민들의 희생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정치권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원의 사법심사를 통해 헌법과 정당법을 크게 일탈하고 있는 정치문화를 정당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혁하도록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높았던 상황이다. 이 사건은 그 동안 기존정당들이 낙하산식 공천, 밀실공천 등의 방식으로 정당민주주의를 탈법적으로 위반해 온 관행에 대하여 법원이 헌법과 정당법에서 천명한 정당민주주의를 옳게 구현하도록 경종을 울려준 사례로서 우리 정당사에서 정당민주주의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라 할 것이다. ㉗

## 사법정의가 부정·타락선거를 막는다

낙선운동 방식은 현행법상 '합헌이나 위법'이다. 낙선운동은 권력에 대한 마지막 견제장치인 시민불복종의 한 유형으로서 부도덕한 입법부에 대하여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저항권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자신에게 주어진 법질서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현실의 부도덕한 정치행위와 부정의한 법 조항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다.

### 낙선운동은 국민의 최후 저항권

따라서 낙선운동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볼 수도 있고,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학설도 있는 것이다. 낙선운동은 시민단체나 이를 지지하는 국민의 사적 이해관계와 무관하다. 낙선운동의 수단도 비폭력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낙선운동은 조금도 위험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은 낙선운동의 방식을 기자회견과 인터넷 홍보만으로 제한시켜 놓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리 서명, 전화 걸기와 같은 방식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거리 캠페인 등을 벌일 경우 총선시민연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충돌은 불가피하며 나아가 경찰과 검찰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을 저지할 가능성이 높다.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

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선뜻 서명운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있는 것은 낙선운동에 썩워지는 불법이라는 딱지 때문이다. 그러나 낙선운동은 시민단체들의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고장난 정치로부터 국민 스스로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펼치는 정당방위로서의 지구행위일 뿐이다. 만일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시민단체가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낙선운동을 전개하지도, 국민이 낙선운동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도 않을 것이다.

### 정치인에 대한 도덕적 요구는 당연한 것

낙선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두고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면 안된다'라고 말한다. 국민과 시민단체가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 단순하다. 부정부패 저지르지 말고,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지역감정 자극하지 말고, 인권을 잘 지키고, 정치개혁 열심히 하고, 선거법 잘 지키고, 이 당 저 당 옮겨다니지 말고, 자신이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 잘 지켜 달라라는 것이다. 이는 도저히 지키지 못할 높은 도덕적 요구가 아닌 국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자세일 뿐이다. 그리고 상당한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들에게 일



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이 기준을 지킬 수 없다면 국회의원을 하지 않으면 된다. 하기 싫은 것을 국민이 억지로 시킨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일부 언론과 정당들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때문에 선거가 혼탁해진다고 주장한다. 어이가 없는 일이다. 선거의 혼탁상은 어떤 것인가. 돈을 뿌리고,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흑색선전을 하고,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다. 총선시민연대가 돈을 뿌리는가? 총선시민연대가 지역감정을 부추렸는가? 총선시민연대가 흑색선전을 했는가? 총선시민연대는 나쁜 정치인을 국회로 보내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뿐이다. 후보 검증은 시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바른 투표를 하려고 해도 유권자에게는 후보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가 없다. 따라서 낙선운동은 누가 '문제 정치인' 인지를 판단해 유권자에게 알려주는 일종의 정보공개운동으로서 시민단체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 엄정한 법집행이 불법·부정선거를 막는 길

선거관리의 주무부서는 선거관리위원회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법원도 선거관리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하며, 검찰은 불법행위 단속과 더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를 받아 선거법 위반자들의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법원은 재정신청이나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인력,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경찰, 검찰, 법원의 공명선거 의지와 조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검찰의 공명선거 의지는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준수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선거가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인 만큼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불법·탈법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당선되고 나면 선거법 위반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지난 96년 4·11 총선 당시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53명 중 기소된 당선자는 모두 18명으로 기소율은 14.4%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검찰의 법집행이 상대적으로 불법을 많이 저지른 여당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가혹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단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판단을 내리지 말고 법원에 판단을 맡기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있는 검찰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법원의 판결도 중요하다. 4·11 총선에서 검찰이 기소한 18명 가운데 100만원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아 의원직을 박탈당한 당선자는 7명이다. 이 가운데 두 명은 임기 3년이 지난 뒤에 확정판결이 났다. 결국 법원의 느장 판결로 가짜 당선자가 3년 동안 국민의 대표 노릇을 했으며, 온당한 의원은 1년밖에 임기를 채우지 못한 셈이다. 반대로 3년이 지나서야 무죄판결이 나는 바람에 온당한 국민의 대표가 그 동안 노심초사하느라고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가. 따라서 선거법 재판은 늦어도 1년 안에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재판을 빠르게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

## '절차의 편의'를 둘러싼 두 가지 에피소드

| 이명래 | 변호사

나는 최근 절친한 변호사 한 분으로부터 씩씩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한 민사사건을 수임하게 되었는데, 1심 기록을 검토한 결과 1심에서 상대방이 신청하여 신문하였던 증인을 다시 신문할 필요성을 느껴 항소심에서 그 증인에 대한 증인신청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이미 신문한 증인을 다시 부를 필요가 있겠냐면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다시 증인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는 고심 끝에 당사자에게 법원에서 오래 뒹말았던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한 법률사무소를 소개시켜 주었다고 한다. 그후 얼마지 않아 항소심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던 그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나는 항소심에서의 증인신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면 처음 항소심을 맡았던 변호사가 계속 항소심을 맡았더라도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다. 혹자는 오랜 법원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훨씬 설득력 있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났을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은 사건을 처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나는 앞서 본 사건의 경우, 그 이외의 요소가 분명히 작용했다고 추측하고 있고, 그 사건을 처음 맡았던 변호사도 같은 생각이었으므로 추측된다. 사건의 결과는 동일

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어떤 변호사에게는 더 많은 '절차의 편의'가 주어졌을 것이라고.

앞서 이야기한 '절차의 편의'는 소위 '전관예우'의 주요한 내용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절차의 편의'는 '전관예우'에 그치지 않는다. 판사, 검사, 변호사도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서로 어느 정도 알게 되고, 이래저래 알고 지내는 관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간혹 약간의 배려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 배려를 기대하게 하기도 한다. 그런 배려나 기대는 어쩌면 '인지상정' 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인간인 다음에야 완벽하게 모든 점을 꿰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 어디까지가 재판의 신뢰성에 금가지 않는 '인지상정'이고 어디까지가 넘어서는 안될 '절차의 편의'인지 기준을 정하기도 마땅치 않다. 이런 어려움을 알기에 나는 조금 무모하게 제안한다, '절차의 편의'나 '인지상정'을 기대하지도 말고, 배풀지도 말자고.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 또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없지만, 우리 모두 그렇게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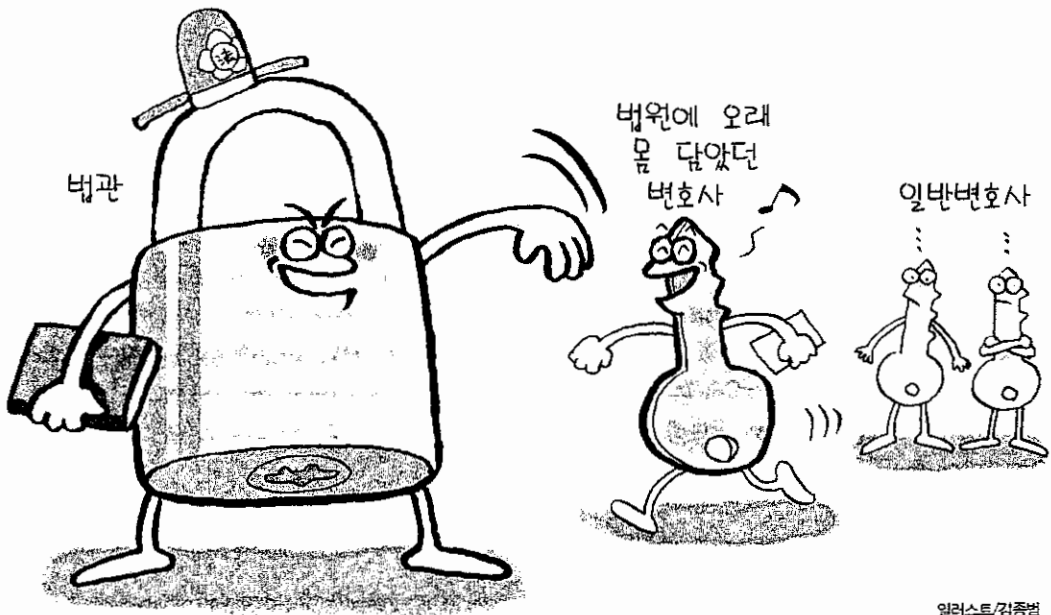
혹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배려 정도야 무슨 상관이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재판의 당사자들은 사소한 차이에도 민감하다. 최근 나는 '법관과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혹시 잘 아는 법관에게 사건을 배당하게 할 수는 없는지' 등등의 고민에 쌓여 있는 의뢰인을 상담한 적이 있다. 내가 아직 젊은 탓에 방자한 것일까. 나는 단호하게 그런 관계

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은 연중에 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나와 상담한 당사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민사 소송이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절차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차치하더라도, 한편에서는 법관과 잘 아는 변호사를 찾다니고, 다른 한편에서는 법관과 변호사가 한통속이라고 비난하는 국민들로부터 더 깊은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절차의 공정성은 너무 중요하다.

사실 많은 법조인들이 '절차의 편의'가 재판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노력의 결과 법조계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지던 많은 구습을 없앴고 청렴하고 공정한 사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많은 법조인들은 변화된 사법 문화와 그 변화를 위한 노력에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법조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지금 우리 사회의 평균적 수준을 넘어서

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다. 현대 사회에서 사법부에 의한 법의 적용은 인권이나 권리를 보호하는 마지막 수단이자 어떤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선언이다. 그 중요성만큼 국민들은 사법부 및 법조계에 대하여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평균 정도가 아니라 최대한을 요구한다. 그래서 법조계의 조그마한 실수나 잘못에도 국민들은 냉정하다. 법조인들은 국민들의 냉정한 시선이 법조계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에 접한 동료 변호사의 경험과 나의 상담 경험이 다시 '전관예우'나 '절차의 편의'니 하는 말을 떠올리게 하기에, 나는 새삼스레 법조인에게 쏟아지는 국민들의 시선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소 진부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나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다소 묵안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작은 관행조차도 떨쳐버리자고 새삼 제안한다. <sup>111</sup>



일러스트/김종범

# 공무원의 시기저하는 결국 국민의 불이익

| 이홍욱 |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사무관

법무사는 법원 및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기와 공탁 사건의 신청 대리를 업으로 하는 직업이다.

과거 변호사의 수가 적었던 시절, 법원, 검찰에 일이 있는 국민들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로부터 저렴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한국과 일본에 특유한 제도이다. 민일 경험 있는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법률 지식과 이론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것이라면 법무사 자격도 사법 시험을 통하여서 부여하였을 것이다.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원, 검찰 업무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도 법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되지만, 기본적으로 업무 경험 있는 사람이 국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청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점에서 법무사 제도의 변경이 시행착오 없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라도 과도기적으로 지금의 법원, 검찰 직원들에게 법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법무사가 법원, 검찰 업무 중 주로 절차적인 사무를 취급한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법무사에게는 고도의 법률적 이론보다는 오랜 경험을 통한 빠짐 없는 일처리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단순히 법무사 시험만 합격한 사람보다는 법원, 검찰에서 다양한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하면서 업무처리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 더 적합하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되어 갈수록 한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과 이를 통해 형성된 전문 지식이 사

**“지금의 직원들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무사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임용되고 근무하여 왔기 때문에, 법개정으로 법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우리 헌법상의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마저 우려된다.”**

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법원, 검찰 직원이 실무에 종사하면서 축적하여 온 경험과 전문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전문가 시대에 들어간 우리 사회가 스스로의 역량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관

세사나 변리사, 세무사 등 다른 자격사들이 특정 직역에서만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법무사는 국민에게 도움 주는 영역이 법률사무 전반에 걸쳐 있어 광범위하다. 또한 다른 자격사들은 매년 새로이 배출되는 수가 적은 데 비해, 법원, 검찰에서 배출되는 경력자는 한 해 수백명에 이른다. 그런데도 갑자기 법원, 검찰 직원들에게 법무사 자격을 주지 않음으로써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무사의 배출이 중단될 경우, 국민에게 제공되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게 된다. 더욱이 지금의 직원들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무사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임용되고 근무하여 왔기 때문에, 법개정으로 법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우리 헌법상의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마저 우려된다.

현실적으로 법원, 검찰의 업무량이 야근과 휴일 근무를 하지 않고서는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한 반면 직원들이 받는 대우는 대단히 열악하다. 이런 환경에서도 대다수의 직원들이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여 왔는데, 법무사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여 사기가 침체된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이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 갈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 전문자격사 규제개혁의 의의와 방향성

| 김태윤 | 한국행정연구원 규제개혁연구센터 소장 정책학 박사

전문직업인단체는 타 사업자 단체에 비해 회원의 구성 및 조직의 속성상 경쟁제한행위의 개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경쟁회파적 성향은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가격, 형편없는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격화되어 왔다. 정부차원에서라도 나름대로 지난 10여년간 전문직업인 단체의 구조와 기능, 설립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특히 작년에 대통령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추진한 전문자격사 규제개혁은 이러한 장기간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다. 그러나 몇몇 단체가 격렬하게 반발하는 와중에 대법원이 법무사 개정법 시행전에 임용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로 법무사자격을 주기로 결정하여 파문은 계속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1999년 8월 25일에 확정한 전문자격사제도 개혁은 전문자격사 자격취득과 법인의 설립 및 운영이라는 두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자격사 자격취득과 관련하여서는 자격사심의 위원회를 가동시키고,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개혁의 주요내용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러한 조치는 결국 전문자격사의 자격취득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진입장벽을 낮추거나 합리화하면 다양하고 높은 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입각한 것으로서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당연한 판단이며, 무한적인 국제경쟁의 시대에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다.

특히 경력공무원에 대한 소위 '자동자격부여 제

**“특정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으로 법무사업무가 수행되다보니, 답합에 의한 내부경쟁의 억제, 가격 인상은 당연한 것이고, 법무서비스시장에서의 혁신과 창조적 파괴는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서비스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은 날로 피폐화 되는 것이다.”**

도'는 전문자격사단체의 폐쇄성과 비전문성을 야기하는 결정적인 원인이었고, 궁극적으로는 관련 서비스의 국제경쟁력에 치명적인 장애가 되는 해악이 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바, 금번 규제개혁위원회의 경력인

정 합리화 결정은 그 타당성이 상당하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현재 활동중인 법무사의 94.2%가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 출신이라고 하니,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법무사가 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아니 할 수 없다. 이렇게 특정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으로 법무사업무가 수행되다보니, 답합에 의한 내부경쟁의 억제, 가격 인상은 당연한 것이고, 법무서비스시장에서의 혁신과 창조적 파괴는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서비스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은 날로 피폐화 되는 것이다. 고통스러운 경쟁을 통하여 산업은 발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국제경쟁력은 자연스럽게 얻어진다. 한줌의 소수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소비자에게 거대한 사회적 거래비용을 발생 시켜온 이 문제를 규제개혁위원회가 용기 있게 돌파하려 하고 행정부의 모든 부처들이 나름대로 힘겹게 따르고 있는데, 법무사의 경우에만 예외를 도모하고 있다는 소문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투명한 과정속에서 대단히 특별한 사연과 이유가 제시되어야만, 법무사시장에의 진입장벽의 온존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분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필자가 아는 한 그렇게 대단한 사유와 이유가 있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김태윤**

# 사법 사상 처음이라구요?

지난 1월 31일 서울지방법원(원장 강봉수)은 사법사상 최초로 '시민과의 대화-새천년을 시민과 함께' 라는 행사를 개최했다. '최초' 라는 표현이 백년의 사법역사를 무색하게 하지만 이번 행사는 법원의 자기변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 여겨진다. 행사를 바라본 내·외부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 이충원 | 연합뉴스 사법부 기자

법원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대개 철저한 확인을 거치지 않고서도 아무 기사에나 '첫 소송', '첫 판결' 이라고 쓰기를 좋아한다. 그날 일어날 일 중 가장 의미있는 것을 골라 기사화해야 하는 언론의 생리 때문이라곤 하지만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셈이다. 여기서 새삼 우리 언론의 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처음' 이라는 건 기사식 표현대로라면 '기사가 된다' 는 신호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이 땅에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사법부가 생긴지도 어언 100년이 넘어가다 보니 어지간해서는 '처음' 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기사거리가 드문 것이 현실이다.

서울지법(원장 강봉수)은 지난 1월31일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과의 대화-새 천년을 시민과 함께' 라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 앞서

이 법원 성낙송 판사가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어느 기자가 물었다.

“그냥 첫 행사라고 써도 될까요?”

“그냥 그렇게 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첫 행사가 맞습니다”, “진짜로요?”

“예. 사법부가 법조인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얘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 건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이 땅에 사법부가 생긴 이래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게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니...., '시민과의 대화' 는 그야말로 '기사가 확실히 되는' 행사였다. 문제는 어떤 내용으로 쓸 것이냐 일 뿐...

## 첫 시민과의 대화-민원 불만 '붓물'

이번에 자리를 메운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

총, 대한노인회 등 시민, 노동단체의 대표들은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에 참석해 이구동성으로 시민들이 법원에서 겪는 불편을 그야말로 '붓물' 처럼 토해냈다. 그 중에서도 대한노인회에서 온 분들 얘기가 출입기자들에게 큰 공감을 주었다.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법원이 이런 행사를 다 갖다니..." "판사님들이 법정에서 목소리를 좀 크게 해줬으면 좋겠어. 워낙 말도 어려운 말만 쓰는데다 목소리까지 작아서 무슨 소린지 도통 모르겠거든..." 강봉수 원장 등 그 자리에 참석한 판사들은 예상치 못한 불만이 터져나올 때마다 다소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그 현장을 보고나서 기자들이 <법원-시민 대화, 민원·불만 붓물>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자 법원에서는 그게 좀 불만인 모양이었다.

"사법부가 대화의 문을 처음으로 열었다'는 점을 강조해줘야지, 그렇게 쓰면 법원이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불만을 사왔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하지만 '사법부가 이 땅에 자리를 잡은지 100년 이상 지난 뒤에 대화의 문을 처음으로 열었다'는 말과 '시민들이 100여년 동안 쌓아왔던 불만을 토해냈다'는 말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 아닐까? 그동안 일반 시민들에게 한번도 대화의 문을 열지 않은 사법부에 대해 시민들이 칭찬만 할 리는 없는 것 아닐까?

물론 법원측에서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이번 행사는 그야말로 첫 행사이고 굳이 다른 칭찬의 말을 쓰지 않아도 그토록 대화의 문을

열지 않던 법원이 어렵게 문을 열었다는 사실 자체가 다른 무엇보다 칭찬받을 일이라는 걸 법원 스스로 알고 있는 듯 했다.

### 언론의 반응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가 중요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그날 언론이 뭐라고 썼는지가 아니라 법원이 시민들의 요구에 얼마나 따르고 있느냐일 것이다. 다른 문제는 모르겠지만 법원이 노인 단체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은 그날 뿐이었던 것 같다. 그 후로도 많은 재판에서 나이드신 분들이 재판을 받았지만 기자가 듣기에는 판사들이 일부러 말을 크게 한다든가 마이크 볼륨을 높인다든가 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 같았다. 젊은 기자들도 판사들이 법정에서 하는 말을 들으려면 귀를 쫑긋 세워야 하는데 하물며 노인분들이야...

이렇게 되면 궁금한 건 내년 이맘때쯤 벌어질 사상 두 번째 시민과의 대화 행사다. 그 두 번째 행사에는 과연 노인 단체 대표들이 또 참석할지, 또 그 분들이 참석해서 "판사님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민원을 털어놓을 경우 법원에서는 또 뭐라고 말할지... ;



# 변화하는 추세에 대응해나가는 사법부가 되어야

| 이재명 | 사법급시센터 간사



성낙송/현 서산지원 지원장

서울지법에서 개최한 '시민과의 대화' 행사의 기획과 실무를 담당했던 성낙송(현 서산지원 지원장) 판사를 만났다.

###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행사개최자체와 그 효과에 대한 내부의 회의적인 시각이 부담스러웠다. 법원이 권위를 버리고 시민들에게 다가선다고 해서 그 의도를 이해할지, 그리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굳이 나설 필요가 있는가, 법원은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다른 한편에서의 우려가 있었다.

### '시민과의 대화'를 기획한 의도는?

작년말 강봉수 지법원장이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법조단체의 의견수렴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하다며 비법조단체 관련자들을 만나고 싶다는 견해를 밝혔다. 여기에 나의 아이디어를 보태 원장에게 기획보고서를 제출한 후 내부 몇몇의 의견을 타진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추진하게 됐다. 법원이 재판만 잘하면 되지 뭐 이런 행사를 하느냐라

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시키려 애썼다.

이번 행사에 시민, 노동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참석시켰는데, 앞으로 이런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사표시인가?

맞다. 오히려 우리가 우려하는 건 이런 교류가 지속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으나 후임간사가 결정됐으니 곧 준비를 할 것이다. 계속해서 분기별 간담회를 갖고 지역별 대표자와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할 자리를 추진할 것이다.

### 내부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좋은 아이디어들과 대안이 제시돼 당초의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대법원에서



도 적극적인 의견청취 시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법원에도 권장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다른 법원에서도 기획안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제기된 불만 사항, 건의사항 등은 처리할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되었는가?**

건의된 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특히 사차계 소환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제기된 건의사항은 시민들과 약속한 사항인 만큼 연말에 결과 보고서를 참석자들에게 반드시 통보해줄 것이다. 의지가 확고한 만큼 믿어도 될 것이다.

**서울지법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사법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방법에 대한 법원차원의 계획이나 이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국민의 사법참여는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도 국민의 법의식이 전제되는 선에서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법원이 사회에서 격리된 부분으로 남아서는 안된다.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교류하면서 변화하는 추세에 대응해나가는 사법부가 되어야 한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행사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서산 지원장으로 가게 된 동기도 여기에 있다. 시민들과의 교류는 개인적으로 평소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시끄럽지 않게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일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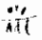
**법원내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점이 어떤?**

법관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있다. 법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고,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위와 신분, 처우, 사기진작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결국 국민들이 느끼는 법원의 변화는 판결의 공정성과 신뢰성 아닐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판결도 중요하지만 법정에서의 태도, 소송 주체자로서의 원만한 진행 등 외양적인 것도 판결의 설득력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 국민들도 판사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일하는지 이해한다면 어처구니없는 오해는 없을 것이다.

**「사법감시」지에 대한 견해는?**

너무 비판적인 논조가 강하다. 그만큼 거부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법조 모니터가 본래의 역할이고 나름대로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비판해 달라. 

## 고압적인 이미지에서 부드럽고 친근한 공무원으로

| 최을 |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어렵게 법률사무소 사무원으로 일하게 된 저에게 주위 분들과 변호사께서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이곳이 보기보다 깨끗한 동네는 아니다”라고 하시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높고 위엄을 지닌 법원건물의 자태, 깨끗한 거리, 그리고 고급스러운 차로 연상하던 법원과 법원주위 환경은 저에게 말끔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위엄은 고압으로, 깨끗함은 염증으로 변해 갔습니다. 지금 저에게 법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불친절’, ‘고압적 행태’, 그리고 ‘부패’입니다.

### 불친절, 고압적 행태, 그리고 뒷돈?

대부분의 경우, 법원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법률용어는 생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민원인들은 접수창구에 있는 공무원에게 이것저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경우 일부 몇몇 공무원들은 작은 말로 혹은 알 수 없는 손짓으로, 저쪽에서 알아보라고 하거나 또는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간단히 대꾸해 버리고 맙니다. 어떤 경우는 아예 대답조차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민원인들은 다른 창구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지만 만족할 만한 답을 얻는다는 것은 그

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공무원이 다 불친절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너무 친절히 그리고 소상히 설명해주기에 고맙다 못해 미안한 마음까지 드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공무원은 불친절하거나 심지어 불쾌하게까지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불친절보다 더 한 것이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자세입니다. 짧게 끝나는 말, 작은 목소리에 반말투.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특별히 잘못된 것도 없는데 웬지 움츠러들게 만드는 분위기 등등. 이런 고압적인 자세는 직업상 대부분의 시간을 법원에서 보내야 하는 저와 같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조차 법원에서 일처리를 함에 있어 망설여지게 합니다. 불친절과 고압적인 행태 외에도, 일반인들에게 법원공무원 하면 연상되는 단어는 부패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종 법원에서 일처리를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무언가(?)를 내심 요구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러한 미묘한 느낌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기록을 복사하기 위해 재판부를 찾아가면, 기록이 판사실에 있거나 좀 전에 기록을 올렸기 때문에 다시 가져다 줄 수가 없다고 하거나, 또는 업무가 바쁘니 다음에 오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기록을 복사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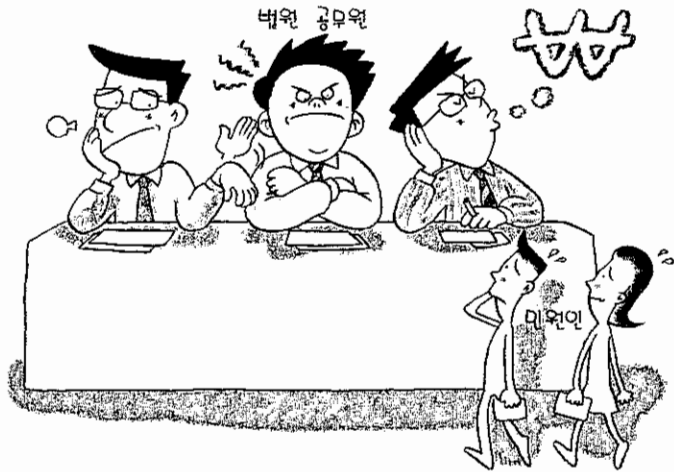
\* 필자는 98년부터 99년까지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다 현재는 참여연대에서 자원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대학원생이다.

해서는 최소한 서너번은 재판부를 찾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운 좋게 재판기록을 바로 복사하는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나서 재판기록을 넘겨주면, 담당직원은 재판기록을 면밀히 살펴본곤 재판부 문을 나서는 저를 다시 부르곤 합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빠뜨렸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암묵적으로 수고비를 요구하는 행위라 생각

이 드는데, 때론 직접적으로 이를 요구하는 공무원도 더러 있었습니다. 어쨌든 업무를 하다보면 수고비, 급행료 등을 주지 않음으로써 업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아마 이러한 경험은 대다수 법률사무소 사무원들에게 공통적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래에는 이런 관행을 많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완전히 사라졌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부의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 공무원들 때문에 법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다수의 공무원이 부패하더라는 생각이 들도록 한다면 잘못된 의식을 가진 소수 공무원들이 반성하고 각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 부패의 발생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 필요

실무를 담당하였던 저로서는 이런 관행을 좀더 투명하게 하여 사전에 부패를 근절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등법원의 경우 재판기록에 있어서 부패의 발생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다른 지방법원에서도 도입한다면 재판기록의 복사에서 발생할 부패를 억제할 수 있



일러스트/김종범

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기록복사 외에도 법원은 민원처리지침을 마련하여 민원인들에게 처리시간을 공지하고, 법원공무원들로 하여금 이를 엄수하도록 한다면 그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행료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막을 수 있고 또한 민원인들이 법원내에서 법원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며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원내에 민원인을 위해 안락한 의자 몇 개 더 놓고, 법원주변에 나무와 꽃을 심는 등의 외적 서비스를 증진시키는 것보다 법원공무원의 친절한 미소, 그리고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개발하고자하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행정에 있어서 '민간 서비스 마인드 (civil service mind)' 가 도입되고 있는 것은 전혀 새로운 시대흐름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고압적인 공무원의 이미지에서 부드럽고 감동을 주는 이미지로 전환함으로써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여영학 / 환경연 공익변호사

중국 북부에서 날아든 황토가 갈끔한 봄별을 희뿌연  
게 덧칠하던 오후, 한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환경운동연  
합(이하 환경연합)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독히도 센 황사  
비람이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게 했던 터라 머릿속은 온  
통 환경문제로 가득 차 있었다. 여영학(38세). 늦깎이로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환경연합에 등지를 튼 그는 수다  
스럽게 '황사에 의한 환경피해'를 걱정하는 기자에게 참  
박을 바라보며, 특 던진다.

"이 보다 10배 이상은 더 심각한 황사비람이 몰아쳐  
야 하는데... 아직은 살만하냐 봐요?" 당신 환경전문변  
호사 맞아? 라고 쏘아붙이려는 찰나 그는 씨익 웃는다.  
해안이 필요하다는 표정으로

지난 2월부터 환경연합에 사무실을 내고 환경관련 분  
쟁들을 연구, 처리하는 여영학 변호사. 그는 사법연수생  
시절 환경법학회 활동을 하면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 이전에는 사회문제, 계급·민족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실, 환경문제는 막연히 불안하다는 정도의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나 환경법학회 활동을 하면서 아,  
현실 속에 실마리가 없는 것은 아니구나 생각했고, 그로  
부터 환경운동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연수생 시절부터 환경연합 활동가들과 환경분  
쟁관련 법률을 검토했다. 석달 남짓 활동하면서 그는 환  
경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100  
여명의 변호사·교수들을  
모아 환경전문 법률자문단  
을 구성하기도 했다.

제주 송화산개발사업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 청  
구,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  
한 법률검토, 최근 그가 벌  
이고 있는 일들이다. 제주  
송화산 개발사업문제부터 그가 조사한 내용을 들어보자.  
"제주 송화산은 이중분화구로 세계 화산지질학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끌고 있고, 보전 가치가 높다는 평도 받고  
있어요 또 주변에 문화유적도 많아요 그런 송화산에  
IMF 이후 '외지도입 관광붐'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송

# “무모하게 돌진하는 자본주의에 제동을 걸자”

| 장윤선 | 월간 '참여사회' 기자

학산은 화산이 폭발한지 200년 정도밖에 안됐고 땅이 화강암으로 굳어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푸석푸석한 흙섬이예요. 그래서 자칫 여기에 무차별로 개발을 하면 지반침하 등의 대형사고 위험도 있을 법한 지역이더군요. 그래서 제주지사에게 이 사업 승인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3월 29일에 청구했어요.”

1991년부터 10년간 진행된 새만금간척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환경연합은 ‘동강투쟁’ 처럼 전면적으로 이 문제에 주력하겠다고 내부토의를 마쳤지만 사실 법률적으로는 쓸만한 강력 수단들이 이미 시효가 다 지나버려 안타깝다고 털어놓는다. 그러나 현재 유효한 수단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간척사업 실시에 따른 매립면허와 실시계획 인가의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이란 것. 시화호사건처럼 주변생활피해나 농작물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해볼만도 한데 새만금간척사업은 너무나 방대해 실제로는 비판적이라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법률검토 중이라고.

#### 공동체문화 사라지면 자연과 인간관계도 왜곡

사실 그는 변호사다. 우리 사회에서 얼마든지 ‘그렇듯하게’ 살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다. 그런 그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똑같이 사법고시를 치르고도 일반 변호사들의 60% 수준에 불과하는 월급을 받으며 그는 만족할까.

“세상의 모든 일이 꼭 돈으로만 보상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안되는 일이 오히려 더 큰 변화의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후배 연수생들이 그래요 형, 언제 출마할 거야? 그럴 때마다 정말 갑갑해요. 무심결 단지는 농담이지만, 농담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누가 1년에 100억씩 주면서 아무 것도 안 해도 된다면 정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뭔가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치할 수 있는 거예요. 전 그런 스타일은 전혀 아니죠.”

오로지 과학자의 꿈을 안고 82년 서울대 식물학 과에 입학했던 여 변호사. 그는 대학 1학년때 ‘이 나

라에선 도저히 과학자가 될 수 없겠구나’ 느낀 후 대학은 완전히 데모하러 다녔고, 제적 이후엔 공장 노동자로 살다 변호사가 됐다. 86년 반제청년동맹사건으로 구속됐던 그는 무던히도 생산직, 사무직 노동자로 살기를 노력했지만 결국 국가보안법 ‘전과’ 때문에 어디도 취직할 수 없었다.


“국가보안법 전과 진짜 오래 가대요? 사법연수원 졸업할 때 퇴직금을 주거든요. 200만원정도 그런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전화왔어요. 전과기록 구해달라고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으면 퇴직금 못준다고 사법연수원 들어갈 때 다 심사하고 들어갔으니 까 안심하고 돈 달라고 해도 그쪽에선 수십년간 교사했던 사람들도 공무원 결격사유 있지 않냐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돈을 받아냈지만, 쓸쓸하더라구요.”

그런 그가 원하는 세상은?

“저 어릴 때 시골에서는 1년에 두번씩 마을사람들이 모여 지신밧기도 하면서 놀았어요. 도랑의 잡초 치우는 것도 우리 일이었죠. 그런데 요즘 농촌은 공동체가 다 파괴됐어요. 물론 편해졌죠. 집집마다 양변기 놓고 집도 다 고치고 그러나 옛날보다 팍팍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도랑엔 잡초가 무성하고 공동체문화가 사라지면 사람과 자연관계도 왜곡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사회가 평화로우려면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봐요. 지금보다 소비수준을 줄이고 무모한 경제성장도 브레이크를 걸고... 아마 지금 속도라면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은 끔찍할 거예요. 무모하게 돌진하는 자본주의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정책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시대는 끝이 보인다. 그가 한국사회를 조망하며 던진 말이다.

“슬로전어 아니라 진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자연환경문제에 관한 한 벼랑 끝으로 서서히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0배 더 심한 황사비람으로 사람들의 무감각한 인식의 지평을 열려고 했던 걸까? 



사이버로

# 법률 · 인터넷

| 김민중 | 전북대 법대 교수



편저자: 김민중

출판사: 법원공보사

정가: 20,000원

(kimmj@moak.chonbuk.ac.kr)



21세기의 중심적 화두는 아무래도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이제는 모든 길이 인터넷으로 통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는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 세상, 사업도 공부도 증권도 물품구입도 방송도 정치도 의사전달도 시민운동도 모든 것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세상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다. 이른바 오프라인(off line)에서 가능한 모든 일이 장차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매일 매일 늘어나고 있다. 그 증가속도는 상상을 초월하고, 앞으로 사람은 하루 12시간 이상을 인터넷과 함께 보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인덱스가 가능한 웹페이지수는 10억개 이상이라고 하고 도달가능한 웹사이트의 수는 500만개에 육박한다고 한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인터넷사용인구가 곧 전체인구의 60%선인 3천만명을 돌파할 예정이며 매년 인터넷이용자가 800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 만큼 인터넷은 일상생활에 가까워지고 있는 셈이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법률에서도 인터넷이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히 넓고 광범위하다.

법률은 본래 정보가 생명이며, 그것도 항상 살아있는 정보가 요구된다. 그리고 현대생활에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인터넷에 의존하여 신속하게 법률정보를 얻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신법률, 새로 나온 판례 혹은 새로운 연구결과나 학술

정보를 법전·판례집이나 로저널(Law journal)과 로리뷰(Law review)를 뒤적일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한번에 검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의 법률문헌과 기타 법률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직접 외국에 가지 않고 필요한 문헌과 자료를 해당 웹사이트를 통하여 바로 구할 수도 있다.

인터넷상에는 무수하게 많은 법률웹사이트가 있고, 그 만큼 담겨 있는 내용도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다양다색이다. 간혹 웹사이트를 서핑하고 있노라면 어디에 어떤 콘텐츠를 가진 페이지가 있는지, 내가 찾는 웹페이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사이버공간에서의 미아가 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다. 망망한 인터넷대해(大海)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미로에 빠져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결국은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인터넷항해를 포기하고 마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법률정보를 얻기 위한 인터넷서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하고, 법률인터넷사이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하는 책이 요구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장차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할 때 법과대학에서 필수적으로 「사이버로」, 「법률정보학」 혹은 「법률인터넷」이라고 하는 과목을 설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앞에서 지적한 내용을 고려하여 최근 여기 저기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수 없이 많은 법률사이트를 모아 이를 각 분야별로 정리한 「클릭! 법률·인터넷」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였다. 「클릭! 법률·인터넷」은 필요한 법률정보를 검색

하고자 할 때에 어느 웹사이트를 클릭하면 되는가를 바로 알려준다.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사이버로 혹은 법정보학(Rechtsinformatik)이 독립한 법학분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클릭! 법률·인터넷」은 아직 국내에서는 그 성과가 미미한 「사이버로」 혹은 법정보학의 인프라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 법률정보는 크게 법령정보, 판례정보 및 학술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클릭! 법률·인터넷」은 법률정보사이트를 국제기구, 법령, 판례, 법학, 법과대학, 법학도서관, 법학연구소, 법률저널, 변호사, 교수, 법률출판사, 법대생, 고시정보, 법률상담, 법률뉴스그룹, 법정보학으로 구분하고, 또한 일반적인 정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한 검색엔진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다.

2) 「클릭! 법률·인터넷」에서 소개하는 법률웹사이트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유럽·일본을 비롯한 여러 외국의 웹페이지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물론 국가마다 각각 다른 법률을 가지고 있지만, 각 국가의 법률은 어느 정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국내의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하여도 외국에서 제공되는 법률정보에 관한 웹사이트의 소개가 요구되며, 외국의 법률정보를 통하여 국내법을 이해하는 비교법적인 연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i

# 왜 시민이 재판을 해야 하는가

| 박홍규 | 영남대 법학과 교수

그동안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주권과 대외제 원칙에 의한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법영역에서 국민주권은 아직도 공론화되지 않고 있다. 국민주권의 원칙은 입법, 행정 뿐 아니라 사법영역에도 관철되어야 한다.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고, 시민이 사법활동을 평가해야 한다. 더 이상 사법이 법조관료의 전유물이었던 늙은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 이에 [사법감시]지는 '시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공론화를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여러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활발한 토론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박홍규 교수(영남대, 법학과)의 차례이다. 박 교수는 10년전부터 시민의 사법참여를 주창해왔다. - 상세는 박홍규, 『시민이 재판을!』, 사람생각, 2000을 참고

사법에 대한 불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사법도 국가기능의 하나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 '의', 국민에 '위한',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사법은 시민 '의' 사법이 아닌 시민을 '위한' 사법도 아니라고 하는 점이 문제이다.

시민 '의', 또는 시민을 '위한' 사법은 본질적으로 시민에 '위한' 사법없이 불가능하다.

## 민주국가와 사법

지배자 전횡의 재판은 민중들에게 가혹하고도 불리한 재판이기 일쑤여서 시민혁명에 의한 근대민주국가의 성립시에 사법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당연히 긴요한 현안이 되었다. 예컨대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이래 권리청원이나 권리장전 등이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하고, 시민에 의한 법의 지배를 확립시키는 문제를 무엇보다 중시한 것이 바로 그 단적인 보기가 된다. 근대에 와서 그러한 요구는 더욱 치열해졌다. 1848년의 프랑스 헌법은 선거로 뽑힌 재판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했고, 미국 헌법은 민·형사재판시에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했으며, 재판관 공선제가 실시되었다. 그후 배심제는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탈리아, 네델란드 등 유럽 전역에 민주주의의 핵심제도로 확대되었다.

사법은 근대국가의 권력분립제가 기본적인 통치원리로 확립된 이래, 구체적 분쟁을



법의 적용에 의해 재판하는 작용으로 입법 및 행정과 함께 국가작용의 하나가 되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사법권은 입법부 및 행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에 맡겨졌다. 그러나 그 법원의 재판은 전문 재판관만이 아닌 시민의 참여에 의해 민주주의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또한 현대 국가에서 행정활동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나아가 사회의 조직화·집단화, 가치관과 이해대립의 다양화에 따라 더욱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더욱이 의회의 상대적 저하에 따라 인권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헌법 규범력의 제도적 보장을 법원에 기대하는 경향이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현대사법의 적극성에 비추어 시민의 사법참여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 우리사법의 특징

해방 후 헌법이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재판관의 인사가 대법원에 부여되었으나 일제하의 사법판료가 그대로 계승되었고 독재정치하에서 그것은 필연적으로 더욱 허구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관료주의로 인하여 과도하고 엄격한 요식주의가 사법에 만연하게 되었고, 법정에서도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이 요구되었다는 점이다.

근대 민주국가에서는 구두주의와 직접주의에 의한 재판의 간소화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었으나, 우리는 그러한 재판제도의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 나아가 한국의 서양법 계수에 있어서도 적어도 일

제시의 파행적인 그것은 문제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방 후에는 민중의 재판참여가 분명히 논의되어야 했으나 정부는 물론 학자들도 그것을 철저히 무시했다. 현실인식에 근거하여 그것을 철두철미 민주주의라는 실천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문들의 주석에 급급하는 지극히 개념법학적인 것으로서 국가주의적 자본주의를 보수적으로 합리화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법학이고 법과 대학 교육의 현실이며, 그것의 무조건적인 암기가 사법시험이라는 기구를 통하여 우리의 법과 사법을 운용하는 기본주체의 자격으로 인정되어 왔다.

한국의 사법제도는 극도의 관료적 권위주의에 입각한다는 점에서 그 유례를 보기 어렵다.

한국의 재판절차에서 민중은 오직 재판의 객체, 곧 피재판자일 뿐이다. 이처럼 한국의 사법제도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가를 철저히 거부한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비민주적 형태이다. 민주국가라면 재판도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사법부가 지배기구의 하나로 존치되고 사법이 지배규율의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그것은 계급사법이 아닌 민주사법이라고 할 수 없다.

### 시민의 재판참여는 인류보편의 요청

시민의 재판참여는 서구식 민주주의에 특수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사회주의국가나 제3세계에도 그것이 존재함을 인식하

는 경우 전혀 타당하지 않은 논의가 된다. 따라서 이는 무슨 특수한 사회의 역사나 특유한 민족성 따위에 의해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고유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일본에서 그것이 채택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에서도 불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일본에서도 1945년 이전에 배심제가 실시되었고, 1945년 이후 지금까지도 검찰기소에 대한 민중통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수년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배심제 제도입 및 참심제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그것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고 심지어 연구나 논의조차 없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한국뿐이다.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고 지방자치제에서 지역단체장과 의원을 뽑으면서도 판사를 뽑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

### 재판의 주체

흔히 재판의 주체는 법관이라고 하나, 그것은 세계의 일반적인 상식은 아니다. 세계에는 다음 네 가지의 재판제도가 존재한다. 첫째, 모든 또는 대부분의 재판이 직업재판관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모든 소송사건이 직업재판관에 의해 행해진다. 둘째, 시민이 법관으로 임명되어 특정종류의 사건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재판을 하고 그것이 재판제도 중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제도이다. 이는 영국, 미국, 호주, 프랑스 및 스위스

등에서 채택되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일반 시민이므로 법률에 대해 모른다. 따라서 법률가의 자격이 있는 서기관의 조언을 받으나, 실제로는 상식에 따라 판결한다. 셋째, 배심제이다. 이는 시민과 직업재판관의 '분업'이다. 곧 재판기능 가운데 사실문제에 대한 판단은 시민 중에서 선출된 배심원들이 맡고, 소송의 지휘, 증거의 취사선택, 법률의 해석 및 적용을 직업재판관이 맡는 제도이다. 넷째, 참심제이다. 이는 시민과 재판관의 '협업' 재판이다. 곧 그들은 일체가 되어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의 해석 및 적용을 행하는 제도이다. 이는 유럽과 사회주의권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위의 네가지는 어느 나라에서 하나만 채택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직업재판관만에 의해 재판이 이뤄지는 경우는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거의 보기 어렵다.

### 시민의 사법참가가 갖는 효용

시민의 재판참여가 갖는 효용은 이렇다. 사법제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영국의 치안판사는 '위대한 무급자'로 불리우며, 참심제와 배심제의 경우에도 사건 담당 직업법관을 합의제가 아닌 단독제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재판의 권력경사를 방지할 수 있다. 직업재판관은 대체로 정부에 의해 임명됨으로 법관은 정부와 대립되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기 쉽다. 배심원이나 참심원은 '시민권리의 옹호자', '자유'의 보루'가 된다. 특히 재판과 재판제도의 관료화를 방지한다. 사법의 독립이란 관

료화의 배제에 의해 비로소 가능하다. 그리고 사실의 인정과 법의 적용으로 구성되는 재판에서 전자는 풍부한 생활경험을 갖는 상식인의 판단을 요구한다. 법은 시민의 소박한 정의감과 공평감각에서 생기는 것이다. 사실인정을 일반인이 담당함으로써 법관의 고민과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그리고 시민의 사법인식을 증대시키고, 유리된 사법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 시민의 재판참여는 사실상 시민과 재판관의 대화와 연대 및 상호이해를 전제로 가능하다. 그것은 법치국가 건설에도 도움이 된다. 곧 시민의 법률교육이 될 수 있다.

#### 탈전문화와 참여가 민주화인가?

탈전문화는 법 운용자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된다. 곧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법실무는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이므로 그 감독이 어렵고, 법실무는 필연적으로 신뢰성과 연대성을 지닌 전문적인 간부의 육성을 필요로 하므로 그만큼 책임성의 확보는 저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법실무의 많은 부분은 특별한 훈련을 요하지 않는다.

탈전문화가 비전문가에 의한 전문가의 대치 또는 통제를 요구하는 것임에 반해, 참여는 법제도와 법절차상의 시민과 전문가의 협력을 요구한다. 그 보기가 배심제, 참심제 및 일반판사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모든 재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배심재판을 형사재판에만 적용하며, 그것도 형사재판의 5%미만이

그 대상이 된다. 영미에서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판사들의 결정과 배심원들의 결정은 동일하고, 따라서 배심제도의 정당성이 주장된다. 그러나 배심원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과도한 기대에 의한 것일 수가 있고 그 어느 것이든 사법예의 시민참여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시민의 재판참여가 사법을 살려내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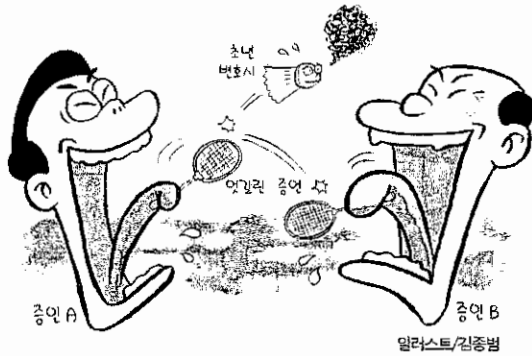
재판의 80~90%는 기계적인 법률적용이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인정에 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성숙되지 않으면,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사실인정은 난제 중에서도 난제로서 그것을 스물 몇살의 암기천재에게 말할 수는 없다. 우리는 그들이 상당한 기간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경험한 뒤에 국민에 의해 법관으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그들에게만 재판을 맡길 수 없다. 특히 사실인정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의 경우와 같이 일반시민으로 구성되는 배심원이나 참심원에게 맡겨 법관과 독립하여 또는 협력하여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판사들의 고민과 책임을 덜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또한 서류 중심의 복잡한 서면주의로 형해화된 재판을 간단한 구두심리 중심으로 하여 사실의 진상에 도달함으로써 죽은 재판을 살려내야 한다.

우리 사법을 살려내는 유일한 길이 시민에 의한 법관 선출과 시민의 사법참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

# 거짓말 선서

| 강신하 | 변호사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바로 개업하여 처음으로 맡은 사건은, 70세 가량의 노인이 토지 상속문제로 다툼이 있던 어느 집안의 한 자녀로부터 법정증언을 부탁 받



일러스트/김종범

고 증언을 했다가 상대방이 위증죄로 고소를 하여 기소된 사건이었다. 의뢰인은 제3자로서 거짓이 없이 사실대로 진술했는데 자신의 증언으로 불리하게 된 측에서 고소를 해 억울하게 위증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정의감에 불타는 순진한(?) 초년 변호사인 나는 의뢰인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기필코 진실을 밝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리라 굳게 마음먹고 사건을 수임했으나 나의 소망은 여지없이 빛나갔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에 대한 서비스와 양심, 거짓과 진실의 한계 등 근본적인 문제들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법정에서 증인은 통상 “본인은 거짓 없이 기억한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처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라고 선서를 한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증인선서의 의미는 거의 없다고 본다. 특히 민사사건의 경우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측에서 신청한 증인과 피고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명백히 엇갈린 진술을 할 때에 분명히 누군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을 위증죄로 고소하지 않고 있으며, 법원 역시 이들을 고발하지 않고 있다. 설령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해도 위증죄의 성격상 공소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검사들도 고소를 꺼려한다.

나는 위 사건에서, 의뢰인의 말만 믿고서 고소인측에 유리하게 진술한 자 중에서 1명, 피고인(의뢰인)측에 유리하게 진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1명을 각 증인으로 법원에 신청하였

다. 먼저 피고인측 증인은 내가 미리 준비해 간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해 주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측에 유리하게 진술한 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첫 신문사항부터 예상과 어긋나기 시작했다.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고소인측 증인은 피고인측 증인과 정반대로 진술했다. 심지어 분노까지 해가며, 우리 법정의 증인신문시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니 법관들도 진실을 가리기가 무척이나 힘들어지고, 재판절차도 지연된다. 여기다가 검찰도 위증죄에 대해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무척이나 관대하며, 설사 기소하여 법원에서 위증죄를 처벌한다고 해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만다. 앞으로는 법원이 동일한 사실에 모순된 증언을 하여 위증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증인의 경우에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고, 검찰은 법원이 고발한 사안에 대하여 이를 취급하는 특별부서를 만들어 위증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입법을 한다면 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곳곳에 만연해 있는 편법이나 거짓을 미워하고, 정직한 윤리가 정착되어 하루빨리 법정에서 거짓말선서가 아닌 진실 선서를 할 날을 기대해 본다.

# 법률가의 윤리를 다시 생각한다

| 한인섭 |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사법감시센터 소장

흔히 좋은 법률가는 나쁜 이웃이라 한다. 송사(訟事)를 하면 3대가 망한다는데, 왜 망할까 과거에는 관가의 토색질이 으뜸 이유였을 것이다. 늘어조지는' 판사, 불려조지는' 검사 등의 행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송사 때문에 집안이 망한다면, 그것은 관청의 토색질 때문이기보다는 재판과 검찰활동에 대한 불신, 그리고 변호사에게 가는 돈 때문일 것이다. 재판으로 이어지는 큰 분쟁 끝에 변호사는 한 밀천 청기는 반면, 송사의 당사자들은 밀천이 거덜나는 사태는 그리 드물지 않다.

## 변호사의 고객지향은 기능적 역할분담

변호사는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봉사할 법적·윤리적 의무를 갖고 있다. 사건을 의뢰받은 이상 그 의뢰인의 목표를 변호사 자신의 목표로 삼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임무를 띠고 있다. 돈을 주고도 충고나 받아야 하는 변호사라면 의뢰인이 달갑게 받아들일 리도 없을 것이다.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변호사의 기본적인 법적 의무이며 이를 어겼을 때는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법적 한도내에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이러한 변호사를 일컬어 '고용된 총잡이'(hired guns)로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무턱대고 비판만 할

일은 아니다. 실정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시민들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대한의 행동을 할 수 있으며, 변호사는 자신과 관계 맺은 그 시민의 힘을 법적으로 강화시켜주는 사회적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변호사의 고객지향 태도는 법체계 속의 기능적 역할분담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각 변호사가 충실하게 자신의 의뢰인을 대변한다고 해도 이는 다른 상대방의 변호사 혹은 검사의 충실한 역할에 의해 견제되어진다. 법체계 전체로 볼 때는 쌍방의 최선의 변론의 결과 실체적 진실이 더욱 확실히 드러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사회정의가 확장되어진다.

이러한 순수한 설명이 현실 세계에서 액면 그대로 통용되긴 어려울 지라도, 적어도 하나의 의미있는 설명으로서의 가치는 있을 것이다. 물론 돈이 없어 유능한 총잡이를 살 수 없는 사람에게 는 상대적으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지만 그것은 개인 변호사가 신경 쓸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의뢰인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사실상 법의 왜곡을 가져오고 진실을 왜곡함에 이르더라도 그것은 개별 변호사의 관심 밖이다. 적어도 법률가로서의 유능함은 직업세계 내부에서 비난할 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가 종종 시민들로부터

터 대단한 비판을 받는 것은 별개의 차원이다. 영화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마피아와 같은 범죄집단의 하수인이 되어 있는 변호사를 우리는 좋은 이웃으로 볼 수 없다.

### 좋은 법률가와 '나쁜 이웃' 사이

변호사는 사건을 필요로 한다. 이혼분쟁, 상속분쟁을 예로 들면, 변호사는 이 분쟁들을 원만히 해결하면 좋은 이웃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 수입료 증대를 위해서는 부부나 상속인간의 파국을 더 선호할 법도 하다. 분쟁화될수록 법률가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재산이 분할될수록 변호사에게 돌아가는 몫이 클 가능성이 있다. 권리를 위한 신성한 투쟁은 이렇듯 가족의 파탄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권리는 확보했으니 좋은 법률가는 나쁜 이웃으로 지탄될 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이혼이 언제나 나쁘며, 상속인간에는 서로 양보만 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것은 아니다.)

판사와 검사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그러나 연고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지인들의 청탁을 법관윤리, 검사윤리에 맞지 않다고 거절하는 법률가는 매정한 사람으로 비판받을 수 있으며, 아직도 판로적 서열의식이 잔존하는 풍토하에서 상사 법률가의 부탁을 거절하기도 쉽지 않다. 원리원칙을 고수하는 법률가는 법률가 세계에서 종종 왕따가 된다. 하지만 주위의 부탁을 잘 들어주고 호인으로 평가받는 법률가가 과연 좋은 이웃으로서의 평판을 얻을 수 있을 지 몰라도 좋은 법률가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인정, 의리, 연고의 가치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 풍토 하에서 좋은 법률가로서 살아남기도 쉽지 않음을 가끔 느끼게 된다.

그러나 악덕변호사, 법조비리가 속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나쁜 이웃인 좋은 법률가를 찾기도 그리 쉽지 않음을 느낀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최악의 법률서비스, 그리고 법조비리라는 후진적 행태를 막는 것이다.

### 좋은 법률가는 본령의 임무 충실한 법 전문가

과연 좋은 법률가이기도 하고 좋은 이웃이기도 한 법률가는 없을까. 우리 헌법 제 103조에서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양심은 말 그대로 인간마음 중에서 가장 선량한 부분이다. 판결 속에 법관의 양심이 담겨 있다고 느껴질 때 재판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내려진 불리한 판결도 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검사도 변호사도 그 양심의 고뇌를 필요로 한다. 그 양심은 때로는 용기로, 때로는 연민으로, 때로는 이웃을 향한 화해의 권유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양심을 표해야 한다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법률가의 결정이 양심의 산물인지, 단지 실정법에 기대어 양심을 회피해간 것인지, 법이라는 폭력에 재미붙여 사는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법률가는 윤리와 양심을 자기 판단의 중심 가운데 끌어 들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좋은 이웃인 좋은 법률가가 되는 길이다. 좋은 법률가가 된다고 좋은 이웃시민이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좋은 법률가가 되지 않고는 그 법률적 활동을 통한 좋은 시민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윤리강령에는 아래의 덕목이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 • 법관윤리강령

사법권 독립의 수호, 품위유지, 공정성 및 청렴성, 직무의 성실한 수행, 경제적 행위의 제한, 정치적 중립

#### • 검사윤리강령

공익의 대표자, 국민에 대한 봉사, 정치적 중립과 공정, 청렴과 명예, 인권보장과 적법절차의 준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건처리, 직무관련 정보 등의 부당이용 금지, 영리행위 등 금지, 특정변호사 선임알선 금지.

#### • 변호사윤리장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 성실·공정한 직무수행, 명예와 품위, 법의 생활화에 헌신, 법률문화 향상, 부정과 불의를 배격 등.

### 법률가가 갖춰야할 4가지 덕목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윤리강령 상의 지침을 열거해 보아도, 법률가는 매우 고매하고 도달하기 어려운 윤리적 자질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법률가 일반에게 필요한 자질로 양심, 용기, 인격, 실력, 지도력, 청렴성, 깨끗한 사생활 등이 요청된다. 여기서는 몇가지만 언급해보자. 첫째 법률가로서의 양심이다. 양심이 무엇인지 규정하긴 어렵지만, 어떤 행위가 양심적인지 판단은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보다 겸손하게 자기 인격의 도야에 힘쓸 것,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도덕지침이 되도록 할 것과 같은 인격적 속성이 포함되어 있음과 함께 불의와 압력에 대하여 굴하지 않는 용기, 약자에 대한 감수성과 사건처리에 대해 고민하는 자세 등 보다 사회적인 속성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공정성을 추구하면서도 재판의 결과에 대해 고민하는 판사, 엄정하고 공정하면서도 내면이 따뜻한 검사, 성실한 가운데 용기와 겸손으로써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는 변호사라면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갖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둘째, 법률가로서의 전문적 지식과 연륜이다. 좋은 의사의 일차적 조건은 확실한 의료지식이듯이, 법률가에게도 법률적 전문지식은 전문

직으로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똑똑하다고 해서 곧 좋은 법적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법적 판단은 지식의 뒷받침을 받은 원숙한 인격의 작품이어야 한다. 오늘날 전문가는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과 연륜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며, 사회전체적으로는 개별 전문가의 능률적 분업을 통한 협업을 통해 전체적인 법률서비스의 전문화를 이루어낸다. 지난 10여년 전보다 법률가 사회는 전문화되어 가고 있지만, 법전문화에 대한 내외적 요청에 부응하기란 턱없이 부족하다. 아직도 많은 법조인들이 변호사를 개업하면서 민사·상사·형사 등 온갖 분야의 전문가임을 내세우고 있으며, 법원과 검사의 대부분도 어떤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라기보다는 민사·형사·행정 등 여러 분야를 골고루 역임하기를 더 선호한다. 이는 전문화의 압력을 적게 느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법률가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 또 법원과 검찰청사 주위에서 개업하여 먹고 살수 있다고 느끼는 이상 전문화를 향한 압력과 동력은 약화될지 모른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 주위에 머무를 때 생기는 상대적 수익이 적어질수록, 송무(訟務) 이외의 법률사무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전문화에 대한 계기는 강화될 것이다. 특히 국제화·정보화의 시대를 맞아 법률가의 국제경쟁력, 국제무대에서의 법률가의 진출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법률가는 대외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이 점에서 법률지식의 분업화·전문화·국제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하며 법률가들은 그에 부응하기 위한 자기혁신을 해가야 하며, 제도적인 조건을 갖추어가야 한다. 셋째, 법률가는 법률적 사회봉사자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오늘날 합리적 사회개혁은 대체로 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개개인의 권리의 실현은 각종

소송과 입법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작업에는 반드시 법률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법률가는 사회적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법적 해결이 당사자에게 만족스럽고 사회전체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며 보다 평화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음을 사회인들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분쟁해결의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낫도록, 보다 나은 법을 향한 개혁의 움직임을 지속해야 하는 것이다. 복잡한 절차, 다층적 규제를 통해 법을 복잡하게 할수록 법률가들이 얻을 이익이 커질지 모르지만, 그 대가는 법률 전체에 대한 불신이다. 따라서 법률을 보다 저렴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법률가들의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이와 같이 좋은 법률가는 좋은 사회를 위한 법적 틀을 만드는 합리적 사회개혁가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치주의 실현은 다만 좋은 법적 틀을 만드는 것으로 되지 않으며 법적 혜택을 사회성원들이 차별없이 받도록 해야 한다. 그를 위해 법률가는 법의 그늘을 주시하고, 그 그늘을 없애기 위해 개인적·집단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개별 변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가의 도움이 계층과 지역, 연령과 성별, 민족과 집단의 경계를 넘어서 골고루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일, 그리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봉사하는 일—이것은 법률가 전체의 공동과제로 맡겨지는 것이다. 넷째, 법률가의 개인적인 인격과 태도의 정립이다. 법률가는 공평무사하고 청렴하고 뇌물로부터 초연하고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이는 모든 시민과 공무원에게 다 요구되는 것이지만, 타인을 법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자는 더욱 그 기준에 자기 구속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남보다 그래도 낫다는 정도로도 부족할 정도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속되게 비유하자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없지만, 겨 묻은 개도 똥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없다. 따라서 큰 잘못은 물론 작은 잘못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평무사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평무사하고 중립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 법률가는 쓸데없는 오해와 분쟁의 회오리 속에 말려 들어가는 안 된다. 법률에 위배되는 정도가 아닐지라도 공동체의 감정이 법률가로서의 평판을 잃게 하는 정도에 이를 때에는 법률가의 법적 판단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물론 이러한 논거를 갖고 법률가의 활동과 자유를 지나치게 규제하려는 방식은 옳지 않지만, 법률가의 태도와 활동이 대중의 신뢰와 공감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떳떳하지 못한 처신으로는 남의 앞에서 남을 판단해야 하는 직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법률가가 대중과 떨어져 고상하고 고고한 척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법률가는 보다 대중적이어서야 할지 모른다. 대중의 정서, 대중의 아픔, 고민을 이해하지 않는 법률가는 자기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모를 수도 있다. 재임 중 보다 중립적이었다고 생각하는 판결은 나중에 보니 강자에 기울어진 판결이었고, 재임 중 보다 약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했다고 하는 내용을 퇴임후에 보니 중립적이더라는 Cardozo 판사의 말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률가는 대중의 물결에 휩쓸리지는 않되, 대중의 호흡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공감력을 키워가야 한다.

이렇게 좋은 법률가의 덕목을 잠깐 살펴보았지만, 좋은 법률가에 더하여 좋은 이웃, 필요한 이웃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노력을 필요로 한다. 법



률가의 법률활동이 공동체 전체의 후생과 복지, 인권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가가 시민에게 보다 다가서고, 시민과 함께하는 길이 그 한 방법일 것이다. 꼭 시민이 아니더라도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시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법률가도 필요하다. 법이 건전한 시민생활의 장애물이 아니라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되도록 법을 바꾸어 가는 공익적 법률활동도 그 예이다. 법률이 거래비용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래비용을 더욱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이웃으로서의 법률가가 할 일이다. 법적 수단을 통해 강자를 견제하고 약자를 복돋아주는 것도 법률가의 소중한 소임이다.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법률가의 활동은 실로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법률가 밖의 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그것 역시 또 다른 미덕이겠지만), 법률가로서의 활동을 통해 어떻게 좋은 이웃인 법률가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찾아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 법조인의 위신, 거품을 빼자

시민사회 속의 법률가는 다른 전문직과 차별되는 고상한 직책이라기보다는 사회전체에서 분업적인 한 전문영역을 취급한다는 겸손한 자세가 먼저일 것이다. 그는 법률에 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legal profession)이자 법률적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legal worker)이다. 작업의 대가로 수입을 얻는 것을 꺼리는 성직이라기보다는 충실한 근무의 대가로 합리적 보수를 당연히 추구할 수 있다. 불성실한 근무, 비합리적인 수입료, 투명하지 못한 일처리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위반하여 비판받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다.

법률가로서의 평판 역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전제로서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률가가 귀족이나 특권층으로 취급되는 시대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법률가라고 당연히 명예와 평판을 얻을 수는 없다. 세속적 성직자로서의 의사·법률가상은 하나의 이상형일 수는 있어도 그러한 이상의 추구는 개인적 선택과 결단의 문제일 뿐이다. 아울러 이러한 이상적 인간형은 법률가에게 국한된 것도 아니다. 기업가에게도, 노동자에게도, 김밥 할머니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평등의 시대에 법률전문가가 당연히 우대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텅빈의 우대를 기대하고 살아서도 안 된다. 오직 성실하고 충실한 직업활동의 집적으로서 개인의 평판과 명예가 형성되어질 뿐이며, 그러한 평판과 명예가 한 직업집단에 축적되면 그 결과로서 그 직업집단 전반에 걸쳐 정당한 위신(prestige)이 형성되어질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 법조인의 위신이 실추되었다고 개탄하는 것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 위신이 실상에 기초한 것이었다면 한꺼번에 실추될 리가 없다. 과거의 법조관행과 지금의 관행을 비교해보면, 과거에 도전 받지 않던 관행이 지금은 스캔들로 재규정됨을 감안하면, 과거에 높았던 법조인의 위신이란 객관적 평가에 의거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이유에서 부풀려진 거품일 뿐이다. 민주화가 될수록 이러한 거품은 건허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실추된 위신이 아니라 현실에서 객관화된 신뢰와 위신을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법률가의 전체적 신뢰와 위신을 높여갈 것인가를 법조인 개인과 단체가 생각해야 할 것이다.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그 기준에 맞도록 감시하고, 자체 징계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11

주요성명서

**"검찰의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친분관계' 보고서" 6월 1일**  
 -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와 연고주의를 드러낸 행위로 관계자에게는 용분의 책임을 물어아

1. 대검찰청에 보고된 일선 검사들과 정치인들과의 '친분관계'를 파악한 보고서는 검찰과 정치권의 유착의 일각을 드러낸 것으로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단적인 사례이다. 또한 우리사회의 필요악이라 할 연고주의로부터 검찰이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 검찰은 보고서와 관련해 명단작성은 '예산이나 제도개편 등 정치권과의 협조 및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해 관행적으로 해온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채널이 아닌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검찰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것으로

검찰 스스로 뒤흔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잘못된 조직이기주의에 다를 아니다.

3. 검찰은 이번 보고서가 대검찰청의 지시가 아닌 일선 지검이 자율적으로 수집·보고했다라고 하나 지시여부에 관계없이 이 같은 행위는 온당하지 못하며, 검찰의 검사동일체 원칙과 상명하복의 관례에 비취박서 설득력이 없는 변명에 다를 아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토록 지시한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혀야하며 관계자에게는 용분의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검찰은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권

한을 지닌 만큼 타기관보다 훨씬 엄격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검찰청법에는 검찰의 의무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정치권으로부터 멀어져야 할 검찰이 학연, 지연과 같은 연고로 통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주고받는 행위를 한 것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고 자신의 존립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이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5월 30일**

1. 집중심리제 강화로 인한 문제점

- 변론준비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는 것은 복잡한 사건이나 본인이 직접 소송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변론을 준비하기 어려움.
- 종전의 변론준비제도가 소송대리인의 협조부족으로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볼 때 신소송절차에서도 그 위험은 그대로 존속할 수 있으며, 특히 실권적 제재를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의 준비부족으로 당사자의 심각한 불이익이 될 것임. 따라서 대리

인의 착오로 준비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은 제한되어야 함.

- 적시제출주의와 함께 실권적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소송촉진을 위하여 실제적 진실발견이 희생될 우려가 있음. 실무상 변론준비기간이 단기 간임을 감안하여 실권적 제재의 예외를 확대해석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현재처럼 실권적 규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음.

2. 변호사강제주의 및 국선대리인,

소송구조에 관하여

- 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사건에서 적극 당사자에 대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특히 재판에 불복하여 상소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국선대리인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위헌의 소지까지 있음.
- 개정안에서 국선대리인이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구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는데, "소송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이지도 문제임. 특히 128조에서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를 예외사유로 삼고 있는 바, 이는 제대로 변론이 이루어진 연후에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안의 규정만으로는 국선대리인제도나 소송구조제도가 충실하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움.

- 개정법에 의하면 국선대리인에게 국고에서 지급되는 변호사보수에 대하여는 당사자로 하여금 갚게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국선대리인 보수가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부담으로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선대리인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선임하도록 하는 것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소장 또는 항소장을 각하 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변호사 강제주의에 의해 법원이 변호사선임명령을 할 경우 또는 당사자가 정한 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장 또는 상소장이 대리인 부재 이외의 사유로 각하되거나 소 또는 상소가 취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

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국선대리인은 직권으로 선임하도록 해야하며 그것이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도 충실히 보장하는 것

⇒ 경제적 약자를 위해 소송구조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소송비용의 분할납부제 등을 도입해야 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소송보험제도가 지 고려.

### 3. 증인에 대한 제재의 제한

- 증인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증인으로 채택되며, 자신의 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시에 증언을 하여야 하고, 증인에게 지급되는 여비와 일당은 지극히 현실에 미달한다는 점, 증언으로 인한 결근, 조퇴 등으로 입는 피해는 사실상 배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정상 출석하지 못한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 따라서 증인에게 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증인의 여비와 일당이 현실화되며, 증인으로 출석하게 됨으로 인하여 어떠한 유형이든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

을 두어야 함.

### 4. 현대형 소송제도의 부재

- 집단소송, 단체소송 등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현대형 소송제도에 관하여 이번 개정안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

- 집단소송에 관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민사소송법 내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더 바람직 함.

### 5. 기타

- 개인정보보호나 기업비밀보호를 위한 소송기록의 열람 등 제한, 비공개재판의 진행가능성에 대한 규정 미 부족.

- 재판이유기재의 생략범위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함으로써 이유기재 생략의 특례범위가 더욱 넓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유기재의 간소화를 추구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법치주의 원칙에도 반함. 합리적이면서 어느 정도 상세한 이유기재는 상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음.

## 본문자료

### 현대전자주조작 대책회의 관련 변호인들에 대한 문책 요구

- 통상적 법률지문 넘어 범칙은페 시도한 변호사들에 대한 형사·징계 책임 물도록 변협에 촉구

1. 참여연대는 현대전자주조작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입수, 검토하면서 이 사건을 자문한 변호사들의 통상적 법률지문의 범위를 넘어선 비행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즉 현대증권이 주도한 현대그룹의 주조작사

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차례의 대책회의를 갖는 과정에서 이들 변호사들은 단순히 사실관계 또는 법률적 용어에 관해 변호사로서 정당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진실 은폐 또는 책임자 축소 등에 관한 의

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변호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범죄혐의까지 있어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상조사 및 그에 따른 형사

## 사법감시시 활동보고

적 고발 또는 징계조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 널리 알려졌듯이 현대전자주조작사건은 98년 5월부터 11월까지 현대증권이 현대상선, 현대중공업 등 현대 계열사들의 자금을 동원하여 현대전자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현대 계열사 및 정씨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건입니다. 주조작사건은 자본주의 시장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한국최대의 재벌그룹인 현대에서 조직적 주가 조작으로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기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소액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던 것입니다.

3. 참여연대는 현대전자주조작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모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관련 형사사건 수사기록을 입수하게 된 바, 그

검토과정에서 현대 경영전략팀 노정의 전무 주재로 관련 현대 임직원들과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현대전자 주식관련 대책회의'를 수차례 개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99년 4월 12일, 13일 오전·오후, 19일, 22일 등 총 5회에 걸쳐 진행된 대책회의는 현대 경영전략팀, 현대증권, 현대상선, 현대중공업 임원들과 울촌 법무법인의 우창록, 강희철 변호사와 강현중, 박종복 변호사 등이 참가(변호사들이 모든 회의에 참가한 것은 아님)한 가운데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4. 이 회의에서 변호사들은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상급자의 책임을 면하고 실무자선에서 사건을 축소하는 내용의 대응방안을 만들어 제시

하는가 하면 전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검토하는 형식으로 현대전자주조작사건의 조직적인 축소, 은폐에 개입하였던 것입니다.

5. 이러한 변호사들의 행위는 변호사의 통상적인 법률자문의 영역을 넘어 당사자의 범죄은폐, 축소에 가담한 것으로서 변호사의 윤리와 품위를 저버린 행위일 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죄책의 가능성까지 있는 행위입니다. 이에 관련된 법무법인과 그 소속변호사 등은 법조윤리의 모범을 보여야 할 한국의 대표적인 로펌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에서 일반 국민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대한변협에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실제적 진실을 밝혀내고 이에 따라 징계, 고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

### 일본 긴키(近畿)지방 변호사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방문

지난 4월 8일 일본 오사카, 교토 등 긴키(近畿)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명이 참여연대를 방문했다. 긴키 지방변호사회의 상임이사과 이사들로 구성된 방문단은 3박 4일동안 한국사법개혁의 방향과 시민단체의 역할을 살펴볼 예정이다.

첫날 일정으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방문한 변호사단은 사법개혁을 위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활동과 한국사법개혁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한인섭 교수(사법감시센터 소장·서울대 법대)와 간담회를 갖고 두시간에 걸쳐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한국의 변호사 수입료와 사법시험 과열화 현상에 대해 일본 법조계 현실과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참여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과제인 사법시험의 자격시험으로의 전환, 로스쿨 도입, 변호사의 공익활동강화, 시민의 사법참여 실현방안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토론이 끝난 후 이들 변호사는 소액주주운동, 작은권리찾기운동, 낙선운동 등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활동 전반에 대해서도 이태호 시민감시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